

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과거에서가 아니라 미래에서 보았기 때문이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 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형제도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박탈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의 가능성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무서운 범죄다.

## 【II】 예수와 인권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일차적 관심은 소외자들의 인권이다. 공생애에 들어선 예수의 첫 선언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고, 예수가 전한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핵심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누명쓴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도 주린 자, 목마른 자, 망명자, 헐벗은 자, 수감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심판주가 좌우측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소외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예수의 관심의 대상, 위로와 구원의 대상은 한결같이 소외자들, 즉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른바 죄인들 일색이었다.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죄인들이란 그야말로 인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계층이었다. 예를들어 가난하여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 창녀, 전과자들, 세리등이 이에 속했고, 나환자나 정신병자 등도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여 죄인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예수는 도리어 그런 계층에 접근하여 교류를 가짐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샀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고 한 그의 초대의 대상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그의 탕자 비유나 잃은 양 비유에서도 똑 같이 드러나고 있다. 즉 예수의 인권옹호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출발한다. 그럼 마가복음 1장에 소개되는 한 죄인의 인권회복의 과정을 살펴 보자.

우선 예수가 그를 불쌍히 여겨 치유했다는 단순한 서술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데 대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지시로 끝난다. 우리는 이를 두고 예수가 모세의 법을 인정했다느니 아니라느니 하는 종교적 논쟁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예수의 이 발언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환자의 생존권 내지는 인권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 나환자야말로 천벌을 받았다는 관념에 의해 제집, 제 사회에서 쫓겨나 당장 생존권에 절대적 위협을 받고 있던 터였다. 그러므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철저한 소외로부터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나병이 완쾌되었다는 제사장의 확인증서가 필요했고, 또 그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의식으로서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려야 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같은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개중에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굳이 집으로 돌려 보낸 경우도 있다. 이것은 예수의 인권에 대한 자의식의 철저성을 뜻한다. 이번에는 성서의 인권 사상을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보자. 가인은 형제 살인자다. 그러므로 저주의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표(oth)를 달아주며 그를 죽이는 자는 일곱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달아준 표! 그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인권이다. 이는 비록 살인죄를 범했음지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권이라는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천부적인 것이며 따라서 신성불가침한 것이므로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라도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한 사회의 죄와 죄인 다루는 태도 여하가 그 사회의 인간화, 문명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한다. 특히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그 나라 법 문화와 민주화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해 평균 20여명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화, 인간화를 지향하는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에도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찌기 예수가 화있을진저라며 신랄하게 책망한 자들이 죄지은 자보다는 도리어 정죄하는 자들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III】 예수와 제도

사실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에게서 어떤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이나 프로그램을 찾기는 어렵다. 예수의 관심이 사회나 실존이나 했을 때 역시 후자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그는 언제나 전체 이전에 개개인을 상대했다. 도매금으로, 전체로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갖는 개인, 고유한 존재로서의 개체에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전체를 무시한 개인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개개인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전체라는 이름으로 페인트칠을 하듯 획일화, 개념화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확실히 사회구원 보다도 인간구원이 우선적인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인간을 정신적 개체로서가 아니라 역사 혹은 사회문제와 유리될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뚜렷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은 없지만 대신 개인의 행동방향을 말할 때는 언제나 기존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처신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가령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경우라든가, 구원의 길을 묻는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등은 이를테면 기존의 사회질서나 소유가치를 거부하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같은 극단한 명령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질서 그 자체 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구원이나 인권에 장애물이 될 때 예수는 단호히 그것을 버리도록 요구했다. 다시말하면 예수의 구원행각이 일단 사회개혁보다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된 죄인들의 인간회복을 목표로했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한생명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질서 범질서가 그것을 가로막을 경우는 가차없는 결전도 불사한다는 게 바로 예수의 기본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안식일법과의 충돌이 특히 그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식일법은 당시 유대사회의 중추적인 비중을 가진 질서로서 본래는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위해 설정된 제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신의 권위로 고식화되어 인간을 결박할 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됐을 때 예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폭탄선언과 함께 정면에서 그 안식일법을 파기해 버렸다.

발제자는 예수의 이 장엄한 선언이 그리스도교 인권선언의 제1장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 사건 역

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예수는 그 어떤 제도나 법이든 인권과 충돌이 될 때는 인권옹호를 위해 기존질서와 주저없이 대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는 또 다른 것도 있다. 나면서부터 팔이 불구인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는 지켜보고선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고 묻는다. 예수의 이 질문은 이미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전제하고 안식일을 상대화한 물음이다. 만약 바리새인들이었다면 당연히 율법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나 범하는게 옳으나 고 물었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예수는 법이전의 차원에서 물었고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쪽에 선다. 주지하다시피 유대종교의 이름으로 체제화된 것 중 안식일법이 가장 엄격했다.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거나 추방된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을 결행했다는 것은 실로 비장한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이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이 헤롯당과 함께 예수를 처치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살리기 보다는 죽이는 법제도와 목을 내던 싸움을 보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국가나 그 어떤 개인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으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법은 그 자체가 이미 악법이요 위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형제도의 존치를 너무나 자명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가공할 살인행위이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제도를 용납 묵인하고 존치시키는 사회의 모든 성원은 사실상 집단 살인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율법도 인간을 위해 있지 인간이 그 율법을 위해 있는게 아니라면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한 제도나 법이나 체제가 과연 용인될 수 있겠는가? 교회의 사형폐지 운동은 예수운동,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비장한 결의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IV】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형문제와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도 억울한 사형수였다는 사실이다.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회대의 비극이었던 예수의 재판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보다 주로 신학적인 해석에 많은 관심을 가진 책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예수의 재판 상황에 관한 한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다. 즉 예수의 재판 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권력과 기득권자들의 폭력에 의해 한 의로운 자의 인권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되는가를 구조적으로 밝히려 했고, 나아가서는 그를 처형한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이다. 요한복음의 편자는 우선 예수 처형의 일차적인 책임을 유대교 기득권자들에게 물음으로써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반면 로마 정부의 처사는 마치 본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은근히 두둔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으나 실은 로마 권력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호도한 것일 뿐이다.

어쨌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와서 고소했다. 그는 우선 예수의 행위를 법에 비추어 본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더욱 집요한 공세를 취한다. 유대인들

의 요구를 거부하면 당장 폭동이라도 일어날 듯한 기세였으므로 빌라도는 거기서 한 번 주춤한다. 자기의 권력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일단은 후퇴시켜야 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심문하기 시작한다. 궁색하나마 뭔가 꼬투리를 잡자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예수의 관심, 예수의 세계관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고 다시 한번 군중들 앞에서 그의 무죄를 선언한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저항은 완강했다. 빌라도의 법은 또한번 후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침내 그는 소위 정치협상을 꾀한다. 즉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일단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유월절 특별사면 케이스로 석방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타협안마저도 거절하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용화책을 시도해 본다. 예수에게 왕관과 왕의 의상을 입히고 군중들 앞에 끌고 나와 조롱거리를 만들으로써 군중들의 증오심을 무마해보려 한 것이다. 바로 이때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며 이 사람을 보라 (Ecce Homo!) 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의 이러한 일련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여전히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다. 사실 빌라도는 그 순간까지도 법에 서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최후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이 사람을 놓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무죄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군중들의 외침이 그를 막다른 골목에 내세운 것이다. 이제 그는 꼼짝없이 자기가 황제의 충신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상황에 몰렸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처형하라는 그릇된 판결을 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충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실은 거짓 군중의 충신이 되고 말았다. 빌라도가 나서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고 묻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외쳤다. 이 추태! 이 비굴! 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였던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수호에 미친 자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비겁과 거짓의 살인자들이 된 것이다. 예수의 인권, 예수의 생존권을 박탈한 십자가 사건의 두 주역인 빌라도와 유대인은 바로 두 유형의 인간상, 즉 타락한 정치인과 종교인을 상징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런 인간들이 낡은 질서를 조종해 왔고 선량한 민중들 위에 군림하여 인권을 억압하며 역사의 탁류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족속들이 역사 앞에, 인류 앞에 한 사람을 세우고는 빌라도의 입을 빌어 이 사람을 보라! 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저 거짓증거의 함성 속에서 입도, 손도, 발도 못가진 한없이 무능한 자로서 있다. 왜 그랬을까? 소크라테스처럼 법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비록 불의한 재판이지만 법이 결정한 이상 승복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비록 고소내용과는 다르나 차라리 죽어 마땅하다는 어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예수는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다” 고 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고 했다. 그렇다. 그의 삶이 곧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의 이 무능한 수난 역시도 진리를 증거하는 사건 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가 패배하며, 심판을 받으며, 수난을 당하며 증거한 것이란 무엇일까. 정치권력의 허구성과 타락한 종교에 대한 폭로와 고발이었다. 그들이 법이요 정의라고 하는 것,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실은 얼마나 가증한 거짓에 기초된 것인가가 가차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심판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했고, 예수를 죽임으로써 스스로를 죽인 것이다.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정의가 서야한다. 그런데 정의는 궁극적으로 종교가 주는 가치관에 의지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정의 관념이 마침내 법을 형성하고 그 법은 다시 권력에 의해 집행된다. 따라서 종교는 정의를 위해 언제나 시대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종교가

역사의식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그 무엇에 안주해 버리면 그 때의 종교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갓 기성의 특권을 옹호하는 어용물 이상이 되지 못한다. 이점에서 한국교회는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유난히도 문민을 강조해 온 김영삼 정권은 무엇으로 보나 과거 군사정권보다는 인권문제에 진취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여전히 이 나라에는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살해하는 잔인하고 미개한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악법개혁과 더불어 사형제도의 폐지를 사회선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페이지에는 매우 희미한, 거의 읽을 수 없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스캔 품질이나 원문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
**특 강**
=====

사회 : 김정웅 목사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

강사 : 한기찬 변호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회장)

제 목 : 함께 넘어야 할 사형이라는 벽

미국의 저명한 사형폐지운동가였던 '클린턴 더피'라는 사람은 일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센테인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아들로 태어나, 교도소 들의 죄수들 속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도관이 되었으며 교도관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도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퇴직 후 <8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라는 책을 펴냈고, 사형제도폐지운동가가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나는 교도소장이 되기 전부터 사형을 증오했다. 소장이 되어 8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더욱더 증오히게 되었다. 이 증오는 인간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형이 너무나도 무서운 결말이기에 증오했다. 한번 사형이 집행되면 그것은 두번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재고할 수도 없으며, 통탄할 만한 오판을 정정할 수도 없다. 나는 사형이 잔인한 것이므로 증오했다. 나는 사형이 인간능력의 무서운 낭비이기에 증오했다. 나는 사형이 우리의 도덕률을 우롱하기 때문에 증오했다.

살인죄가 인간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도 사형수에 대한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나는 사형이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정신적 능력도 모자라는 약자를 골라서 이루어지기에 증오했다..."

그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끝이 없다. 우리는 90명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한 한 교도소장의 체험적 고백을 통해 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은뉘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형! 이미 선진국의 대부분이 폐지 하였거나 속속 폐지하고 있는, 박물관속의 형벌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사 그 폐지의 이유를 알아보자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나라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많으며 또 실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숫자로 볼 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형 남용의 국가로 악명이 자자한 형편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의 범죄수를 추가해 나가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식 또한 지극히 완고하며 보복적 충동의 감정에 충만해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사형에 관한 한 중세의 암흑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형은 '죄악'이고, '미신'이며, 우리의 '수치'이므로 지금 당장 폐지해야만 한다.

### 오관에 의한 무죄한 자의 사형은 되돌릴 수 없어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가 사회 국가라는 것을 조직해 살게 되면서부터 인간들은 최선의 사회질서 유지수단은 형벌이라고 믿었으며, 그 형벌의 핵심은 바로 사형이었다. 그래서 사형은 잔인하게 집행할수록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수록 사형의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믿었다. 사람의 생명을 말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빈번하고도 확실하게 가동시키면 질서는 유지된다는 사형에 대한 맹신은 오래도록 인류를 사로잡아왔던 것이다. 이것을 사형의 위화력이라고 한다.

인류가 사형의 위화력을 불신하고 반기를 든 것은 불과 2-3백 년 전의 일이다.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베카리아'(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음)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동기는 당시의 사형의 남용과 잔인한 집행이었다고 한다.

이를 시발로 서구사회는 사형의 존폐에 관한 격심한 논쟁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사형이 폐지된 것은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의 미시간 주였다. 1846년 미시간 주의 사형폐지를 시초로 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80여 개 국가에 달한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에서는 사형의 폐지를 선언,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엠네스티는 1989년 부터 사형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먼저 깨친 사형폐지론자들, 아니 사형폐지운동가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면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폐지의 이유는 주장자만큼이나 다양하지만 편의상 이를 유형화해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인도적 이유이다.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때문에 우주의 무게보다도 무겁고 고귀하며 소중하다. 따라서 하나뿐인 생명을 근본적으로 박탈, 말살하는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 모든 폐지론의 출발점은 바로 인도적 이유에서이다.

잔인하고 끔찍하며 고통스러운 사형집행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사형을 반대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입법하는 입법자들, 구형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들에게 사형집행장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종교적, 특히 그리스도교적 이유이다. 십계명 중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살인자를 형벌이라는 미명으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요구하게 된다. 대저 생명은 하느님만이 창조 허락하신 것인데, 인간은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일진대, 인간이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근절시킬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즉 생명을 줄 수 없는 인간이 생명을 없앨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형사정책적 이유이다. 사형존치론자나 사형승배론자들이 맹신하는 것처럼 사형은 위화

력이 없다. 즉 살인자는 사형에 겁먹고 살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판정이 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의 통계와 검증, 연구에 의하면 사형을 폐지한 후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 살인범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클린턴 더피'의 증언을 들어보자. 간통한 아내를 사살하고 사형수가 된 어느 경찰관은 사형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장, 가스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맹세컨대 이런 걸로 살인을 예방할 수는 없소." 요컨대 사형제도는 살인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없앤다고 해서 사형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형폐지 후 살인범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적지 않다.

넷째는 법률적 이유이다. 오늘 날 형벌의 목적은 과거처럼 맹목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탈리오 법칙의 적용이 아니다. 형벌은 응보나 보복, 피해자를 대리한 응징이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육적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형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화 교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형은 형벌의 목적이나 본질에 당연히 반하는 것이므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오판의 가능성 때문이다. 오늘날의 모든 형사재판은 증거재판 주의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불완전한 인간이며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 모함, 왜곡, 증거의 조작, 위증, 편견, 선입관, 오해 여론의 질타 등 인간의 판단을 흐리치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은 어떤 재판제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오판으로 무고한 자를 사형장으로 보낼 가능성을 안고 사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백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라도 오판으로 인하여 무죄한 자를 처형한다면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사형은 반대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판에 의한 처형은 회복하거나 정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1965년 영국이 사형을 폐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다름 아닌 오판에 의한 무죄한 자의 처형 때문이었다.

여섯째는 사형은 남용되고 악용되기 때문이다. 사형은 인류사에서 남용되고 악용된 제도였다. 통치자, 지배자가 반대자나 정적을 일거에 말살하고 탄압하는 수단은 사형이었다.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1979년 파키스탄의 '알리 부트' 전 수상의 처형은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사형이 악용된 대표적인 실례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죽산 조봉암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형이 악용된 사례로 기억해 둘 만하다. 하물며 남용의 경우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일곱째는 사형은 불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형수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그들은 대부분이 약자이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지위가 있는 자보다는 없거나 낮은 자, 교육을 받은 자보다는 못 받은 자,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사형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같은 살인을 하더라도 강자보다는 약자가 더 희생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닌 엄연한 차별이고,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사형은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다.

### 시기상조론도 변형된 존치론

이상과 같은 폐지론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격해 온다. 먼저, 사형은 대부분의 국민히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살인범 흉악범을 처단하는 것은 정의라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폐지의 경우보다 높다. 그러나 사형의

존폐는 국민 여론의 향배에 의존되는 문제는 아니다. 1949년 서독 헌법의 아버지들은 국민 대다수가 나치전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했음에도 그들의 결단만으로 헌법에서 사형을 부정하여 폐지하였다. 국민투표 방식에 의하는한 사형은 폐지될 날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정의라는 것이 반드시 잔인한 극형을 통해서 수립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음, 그들은 사형이 가장 확실한 범죄의 억제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사형의 위화력이라고 하거니와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미신인가는 이미 살핀 바와 같다. 다시, 그들은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수를 장기간 교도소에 격리시키는 것은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오해이다. 사형이 폐지되어 무기 또는 종신으로 복역하게 되는 경우, 그들은 노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데, 그 가치는 비용의 몇 배, 몇 십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폐지 후의 대안은 첫째, 폐지 그 자체이지만, '종신형'은 훌륭한 다음의 대안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무기징역형은 빈번한 가석방, 감형, 특사로 인하여 실제로는 20년 정도의 복역형으로 대치되고 있다. 종신형은 이러한 형기 단축을 배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후자는 사형폐지론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시기상조론도 변형된 존치론에 불과하다.

사형폐지론은 사형의 구형이나 선고를 신중히 하고 집행 방법도 덜 고통스럽게, 인도적으로 하자는 주장도 배격한다. 사형이 국가의 살인일진대 '인도적 살인'이란 악어의 눈물과 같은 위선이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사기인 것이다.

**결코 이상주의자들의 꿈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형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제에 의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숭한 사형을 경험하고서도, 해방된 신생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에 대한 일고의 숙고도 없이 사형이라는 야만적 형벌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희미하였다. 그러나 1989년 5월 30일 이 땅의 먼저 깨친 종교인, 법조인, 시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사형폐지운동이 시작되었다. 바로 사형폐지운동협의회 결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아직 완고하게 견재하다. 최근 성안된 헌법개정안에서도 사형은 유지되고 있다.

사실 사형폐지는 쉬운 관제는 아니다. 입법자, 검사, 판사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흉악범 살인범에 대한 극형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태도를 바꾸라고 설득하기도 더욱 어렵다. 그러나 사형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자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형의 존치를 수치로 여길 계기는 조만간 주어질 것이다.

사형폐지를 향한 운동은 결코 이상주의자들의 꿈이 아니다. 사형이라는 야만과 미신을 타파하여, 사형을 폐지한 세계의 선진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성숙한 사회 질서를 이룩하려는 시민운동인 것이다. 그것은 또 오늘날 만연하는 인간중요, 인간학대, 인명경시 풍조에 대항하는 고귀한 생명운동이며, 80년대의 살륙과 고문, 인권유린을 거부하는 인간화,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사형의 미신에게 해방되자. 사형의 폐지 없이 인류애, 동포애, 생명존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 이 운동이 열매 맺는 날은 적어도 2천 년대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
**사 례 발 표**
=====

사 회 : 김 정 응 목사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

강 사 : 탁 지 원 선생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제 목 : 사형수 원언식

이 름 : 원언식 생년월일 : 1957. 6. 17.
최 명 : 건조물 방화 및 치사 형의종류 : 사형
수감지 : 서울구치소 수인번호 : 4070번

원언식은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현존 건조물 방화 및 치사죄로 대법원에서 1993년 12월 30일 사형이 확정되어 형집행 대기중인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원언식은 강원도 원주군 흥업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1남 4녀중 8대 독자로 태어나 11세때 교통사고로 부친을 잃고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지적공사에 취직하여 주경야독으로 독학하여 통신과정의 고등학교를 마칠 정도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품이 착하여 범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방화사건 직후 원주시민 1만여명이 그의 구명을 위해 서명한 사실은 그가 직장에서는 모범사원이었고 가정에서는 효자이고 좋은 가장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1982년 10월 신성숙을 아내로 맞아 1983년, 1984년 두딸을 낳아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1991년 5월경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호와 증인의 유인물인 파수대를 팔러 다니면서 부터였습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여호와 증인 교리에 심취하여 마침내 아내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가정은 파괴되어 아내와 착한 남편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는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1992년 6월경 원주 시내에 방 한칸을 세워서 2개월간 혼자 지내면서 아내의 회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가정을 등지고 더욱 왕국회관에만 매달렸습니다.

또한 증풍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된 홀어머니를 아내가 모시지 않겠다고 하여 노모가 딸네집

으로 전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심한 괴로움을 겪어야했습니다. 1992년 8월경부터 그는 견딜 수 없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술을 자주 마셨고 술을 마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미칠 것 같다. 병든 노모를 못모시는 불효자식이다. 가정을 파탄시킨 여호와 증인은 원수다"는 등의 푸념을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1992년 10월 4일 직장에서 숙직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다가 싸움으로 번지자 화가나서 밖으로 나가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왕국회관으로 간 뒤였고 두 딸아이는 엄마를 찾으려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그는 휘발유 한 통을 사서 왕국회관으로 달려가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여호와와 증인들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인식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후 그 길로 뛰쳐나왔습니다. 불길을 보고 그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정신을 차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변호인척에서 범행당시 그의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은 동기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생된 사람들과 유가족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고 있고 더구나 9개월전에는 여호와와 증인이라는 이단사이비 종교단체 때문에 자신이 사형수가 된 것에 반감을 갖고 하나님 "하" 자 하나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나타내던 그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는데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이라는 형벌을 담담한 심정으로 받아 들이면서 신앙으로 돌아선 그는 저지른 죄에 대한 작은 속죄의 뜻으로 안구, 장기를 기증하고 시신을 의학실습용으로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범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원인을 따져볼 때 여호와와 증인의 반사회적인 교리때문에 아내를 잃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재판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범죄자가 회개와 교화로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며 범죄예방의 안전장치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범죄발생이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함도 크므로 전체국민의 공동책임이 배제될 수 없으며, 오관이나 남용의 판결로 인해 생명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 폐지론이 선진국가들의 세계적인 추세인 이때 우리정부가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연구기간을 통해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형수들이 그들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신앙의 새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 종합토의

=====

사회: 김진욱 목사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총무)

2. 인간 생명의 존엄성

사람은 인간 생명의 존엄과 영혼, 조화적 감응 신의성이란 것은 인간이 가진 특성이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70년 동안 약 10억 명이 남도록 된다고 한다. 영혼이란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영혼의 영기, 영혼의 조화적 감응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 폐 회 예 배

인도 김태규 목사  
(총회 인권위원회 서기)

목	도	-----	다	합	계
찬	송	----- 268 장 -----	다	합	계
기	도	-----	오	형	태 장로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					
성	경	봉	독	-----	마태 6 : 25-26 -----
설	교	-----	소	중	한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직전위원장)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92 장 -----	다	합	계
광	고	-----	사	회	자
축	도	-----	문	장	식

### =====찬 송 가=====

#### << 268장 은 세상 위하여 >>

1. 은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해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2. 은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은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입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 <<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 령 :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폐 회 예 배 설 교

### 소중한 인간의 생명(마태6 : 25-26)

문장식 목사(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직전위원장)

#### 1. 인간 생명의 기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다고 하였다. 모든 동물과 자연을 보더라도 종족 번식과 생존 경쟁을 위해 수억 만년동안 살아남은 생명체임을 볼 때 자연하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의 생명까지도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걸핏하면 “죽여버린다” “치치해버린다”고 하며 무슨 기계나 흙 다루듯이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2. 인간 생명의 신비성

세상에 인간 생명의 신비와 협동, 조화와 같은 신비함이 또 있을까. 인간의 심장은 잠시도 쉬지않고 70년동안 약 10억번이 넘도록 뛰는다고 한다. 동맥에는 뜨겁고 깨끗한 붉은피가 힘차게 뛰고 정맥에는 검붉은 더러운 피가 약하게 흐르는데 폐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며 더러운 피를 신선하게 정화시킨다.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온 몸에 보낸다.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용감히 싸운다.  
백혈구의 용기와 희생정신 봉사를 생각할 때 생명의 위대한 신비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몸은 33조의 세포로 되어있고 인간의 대뇌는 약 140억의 뇌세포가 있는데 “생각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신비한 존재이다. 식물도 넘어지면 다시 태양을 향하여 일어나려 하는데 이것을 “항일성”이라 한다. 인간에게도 피가 흐르면 자연히 자체 응고력에 의해 멈추게 된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자정작용”을 통해 살아 난다. 이런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

#### 3. 인간 생명의 존귀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나라의 상속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진리가 된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존귀한 생명을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파괴 할 수 없다.  
흉악 범죄인의 생명이라도 인간 공해 차원에서 나무가지 치듯 쳐서 처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죄는 미워해도 생명까지 죽여서는 안된다. 자연 파괴의 원인이 인간 생명 경시 사고에서 발생했

다고 본다. 생명이 인간 보육감정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공해는 자연환경 파괴보다 더 심각한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인간은 생의 본능과 생존권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살고자하는 본능이 있다. 생존권이 있다. 식물들도 쓸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본능이 있다. 그것을 "항일성"이라 한다. 흐르는 물도 썩지 않고 살아 가기 위해 "자정작용"을 한다. 나의 생명은 개인의 생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체이며 내 부모의 분신이요 내 가정 공동체의 일원이며, 내 민족의 한 핏줄이다. 한 생명이 병들고 범죄하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고통이다.

나의 생명이 끊어지면 후대가 끊어진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후대까지 계승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요 의무이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죽을 육체 위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후4:11-15) 그래서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 뿐 아니라 그 가문을 끊어 버리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 4. 결론

복음전파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데 있다. 육과 영혼 모두 한 인간의 생명과 사회를 구하는데 있다. 지금 사회는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생명을 쉽게 처치해버리는 생명파괴의 공해가 심각해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책임을 느끼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인간과 모든 생명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명이 위협할 때는 서로 보살피고 먹고 입을 것 보다 하나님 나라, 무공해 생명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자.

## 자료 목록

=====

1. 제 1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결과
2. 제 2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결과
3. 제 78회기 활동 경과
4.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통계(연도별, 죄명별)



## 제 1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결과

1. 목 적 :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교회의 대응방안 연구
2. 주 제 : 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나
3. 일 시 : 1992년 4월 23일(목) 오후 2시 개회
4.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 1연수실
5. 참 가 자 : 82명
  - 가. 총회 인권위원 - 15명
  - 나. 각 노회 인권위원이나 인권선교 관계자 - 30명
  - 다. 총회 직원 - 3명
  - 라. 사형제도폐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 장로, 평신도 - 29명
  - 마. 다른교단 및 단체, 변호사, 신부, 수녀 - 5명
6. 강 사 :
  - 개회예배 설교 - 김윤식목사(예장 총회 총회장)
  - 축 사 - 이상혁변호사(사형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의장)
  - 강 연 1 - "사형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중성박사(전 장신대 학장)
  - 강 연 2 - "사형에 대한 법적 문제"  
김일수박사(고려대학교 법대교수)
7. 일 정 표
 

13:00	-	14:00	: 등	록
14:00	-	14:30	: 개 회 예 배	
14:30	-	14:35	: 개 회 인 사 (사형제도폐지위원장 문장식목사)	
14:35	-	14:40	: 축 사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의장 이상혁변호사)
14:40	-	15:30	: 강 연 I	
15:40	-	16:30	: 강 연 II	
16:30	-	17:00	: 사 례 발표 및 정책토의	

##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켜 나아갈 생명권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목적이 꼭 사형에 있는가?"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응보적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온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여인을 놓아 주신 일과 죄없으신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 의 오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1. 우리의 입장

- 가) 사형은 인간이 법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절대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다.
- 나) 사형은 또 하나의 국가의 살인이며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복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 사형은 남용과 오판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생명에 관한 재판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라) 사형은 범죄 예방이나 억제책이 될 수 없고 사형은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감소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흉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공포불안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 마) 사형은 사형집행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어서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 바) 살인사건 등 극악한 범죄 사건은 그 사회와 우리 모두 함께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2. 우리의 결의

- 가) 사형제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한다.
- 나) 우리는 국가가 사형을 지체없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다) 우리는 사형폐지운동을 인간성 회복과 생명운동 차원에서 선교하는 각오로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 라)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측에 대한 보상과 권위보호를 위한 운동과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화해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마) 우리는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국내외의 모든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며 범교단적으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 3. 우리의 제안

사형 대신 중신형, 감형없는 무기 내지는 100~200년형으로 대처할 것을 제의한다.

1992년 4월 23일

총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제 1회 사형제도폐지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

## 제 2 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결과

1. 목 적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방향성 모색
2. 주 제 : 생명운동과 사형폐지
3. 일 시 : 1993. 5. 17 - 5. 18
4.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 1 연수실
5. 강 사 :

개회예배설교 - "하나님의 형상"(창1:26-28) - 김윤식 목사  
(직전총회장)

축 사 - 이상혁 변호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회장)

격 려 사 - 이영갑 장로(총회 사회부 총무서리)

주 제 강 연 - "함께 넘어야 할 사형이라는 벽" - 한기찬 변호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회장)

특 강 - "기독교와 사형폐지" - 김수진 목사  
(장신대 강사,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 황등교회)

사 례 발 표 - "사형수 강순철" - 김혜원 권사  
(서울구치소 종교지도위원, 새문안교회 권사)

"피해자측의 인권문제와 사형수의 마지막 선행"  
- 문장식 목사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

폐회예배설교 - "사형폐지의 당위성"(창4:8-15) - 이의호 목사  
(총회 평화통일연구위원장, 서울산정현교회)

6. 참가자 : 95명

7. 일정표

5월 17일(월)	오후	2:30 - 3:00	등록과 숙소배치
		3:00 - 3:40	개 회 예 배
		3:40 - 3:50	축사 및 격려사
		3:50 - 5:00	주 제 강 연
		5:00 - 6:00	특 강
		6:00 - 7:00	저 녁 식 사
		7:00 - 8:00	사 례 발 표
5월 18일(화)	오전	8:00 - 9:00	아 침 식 사
		9:00	폐 회

##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문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형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우리는 지금 개혁과 민주화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다음과 같이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 1. 우리의 입장

- 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심판권을 갖지 못하며 어떤 이유로도 박탈할 수 없다.
- 나) 사형은 회개와 교화로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모순된 제도이다.
- 다) 극악한 범죄자라도 사회환경과 사회, 경제적 구조악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국민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죄책감을 통감한다.
- 라) 재판은 유한한 인간들에게 맡겨져 오판이나 남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을 재판에 맡길 수 없다.
- 마) 사형은 범죄예방이나 억지책과 안전 장치가 못되며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

### 2. 우리의 결의

- 가) 우리는 사형제도폐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김영삼 대통령께 사형제도폐지를 건의키로 결의한다.
- 다) 우리는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실천인 생명운동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라) 우리는 피해자측의 인권회복과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마) 우리는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서며 본교단 총회가 사형제도폐지 서명운동을 결의토록 촉구한다.
- 바) 우리는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는 국내외 여러교단 및 단체와 연대하며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 한다.

### 3. 국가에 대한 제안

- 가) 국가는 3년내지 5년간 시험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정지할 것을 제안한다.
- 나) 위 시험적 폐지기간 중에 사형제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으로 중신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1993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2 회 사 형 제 도 폐 지 정 책 협 의 회 참 석 자 일 동

총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제 78회기 활동 경과

I. 조 직

위원장 : 이명남 서 기 : 김영기 총 무 : 김진욱  
위 원 : 이정일 김상해 금영균 문장식 김태규 허달수 김정웅  
소의수 김수진 임윤석 정만호 오형태 김병현

II. 회 의

- 가. 제 1 차 회의(1993. 12. 2)
- 나. 제 2 차 회의(1994. 2. 3)
- 다. 제 3 차 회의(1994. 4. 29)

III. 경 과

- 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 명령권을 유보해 줄 것  
과 사형을 무기형(중신형)으로 대체해 달라는 청원서 제출  
(1993. 12. 7)
- 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수 강순철 씨를 무기형으로  
감형해 달라는 청원서 제출(1993. 12. 24)
- 다. 위의 가항에 대한 2차 청원서 제출(1994. 4. 11)
- 라. 사형수 원언식 씨의 구명을 위한 서명 전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EL: 02-477-2000 서울시 중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303호 TEL: 741-4350~1 FAX: 766-2427

청원서

김영삼 대통령 귀하

1993. 12. 7.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에 왔습니다.
2. 사형은 범죄자가 회개와 교화로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안전장치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범죄발생이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함도 크므로 전체국민의 공동책임이 배제될 수 없으며, 오판이나 남용의 판결로 인해 생명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으며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 형이 확정된 모든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3년 내지 5년간 유보해 주시고 위 시험적 유보 기간 중에 사형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으로 중신형을 채택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 이 명 남

법 무 부

우 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3-7053 / 전송

문서번호 검이61070- 2/04

시행일자 1993. 12. 20.

수신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참조 303호 이명남

제목 진정한 회신

1. 귀회에서 1993. 12. 13. 당부에 제출한 사형제도 관련 건의서에 대한 답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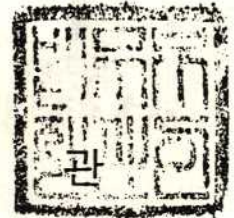
2. 귀회의 건의 취지는,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성회복기회를 영구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이니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3-5년간 유보하고 그 기간중에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거쳐 중국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중신형을 채택해 달라는 것인 바,

3. 귀회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며,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판의 잘못을 극복할 수 없고,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하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인 개선과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형폐지주장이 꾸준히 전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될 것을 원한다는 점(형법개정

공청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형법개정안과 관련된 형사법개정특별심의회에서도 사형을 존치하면서 다만 사형범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다만 사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형이 극형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이 정해진 범죄의 경우에도 사형의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하도록 형법개정안 제44조 제3항에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귀회의 의견은 당부의 장기과제로서 계속 연구검토할 것을 통보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 무 부 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303호 TEL.: 741-4350~1 FAX.: 766-2427

청원서

김영삼 대통령 귀하

1993. 12. 24.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드폐지위원회는 1993. 12. 7. 귀하께 민원사안을 "사형제드 폐지 요망"의 내용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위 청원 취지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사형수 강순철 씨에 대한 감형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청원서 1부  
2. 감형청원 978명 서명부 1부  
3. 강순철 관계기사(기독교연합신문 제 286호 1993. 12. 26. 발행)사본 1부 (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드폐지위원장 이명달

청원서

이름 : 강순철      생년월일 : 1968. 5. 1. (25세)  
죄명 : 강도살인      형의종류 : 사형  
수감지 : 서울구치소      수인번호 : 2212번

강순철은 91년 4월 살인죄로 사형확정 선고를 받고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형집행 대기중인 사형수입니다. 중학 중퇴의 학력에 소년원 출입이 있었던 그는 90년 5월 7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지하 봉제공장에 공범인 최학규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도망간 애인의 행방을 알려는 목적으로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여성 근로자 박진희(당시 19세), 박미숙(당시 21세)씨를 협박하고 맥주병으로 때려 금품(20만원 상당)을 빼앗고 강간미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석유를 실내에 뿌리고 불을 지른후 도주하였습니다. 박진희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박미숙 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공장은 화재로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된 강순철은 귀하하여 잠을 자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강순철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후 90년 8월에 구치소 종교 지도위원 김혜원 권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90년 12월에 문장식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감초기의 그의 난폭한 행동과 불안한 정서는 날이 갈수록 순화되었고 참회의 날들을 한글공부와 성경읽기,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도, 재소자들에게 전도하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젊은 그가 어느날 예고도 없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욱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감형의 기쁜소식이 전해 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소식에 충격을 받아 실어증과 활동 불능 상태에 있고, 어머니가 인근 식당에서 일하여 대신 가족부양과 아들 면회의 짐을 떠맡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직후 그 부모는 소유하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아 피해자 박미숙 씨의 화상치료와 성형수술비를 부담했고 피살자 박진희 씨의 유족을 찾아가 위로금과 사죄의 뜻을 전한 점으로 미루어 그 가족들의 심성이 순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순철의 범행은 사전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기 보다는 허욕에 들뜬 젊은이가 떠나간 애인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그 애인의 여자친구를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찾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할때 사형이라는 최고형은 과중한 감이 있습니다. 이는 그해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수사과정이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개혁과 화합"의 새시대를 바라보는 오늘, 사형수 강순철 씨가 '신한국 창조'의 한 몫을 교도소에서나마 할수 있도록 그의 형량을 무기형으로 감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법 무 부

우 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3-7053 / 전송

문서번호 검이61070-46

시행일자 1994. 1. 12.

수신 이명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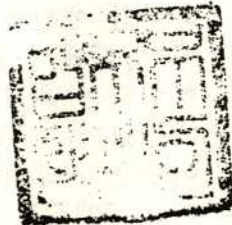
참조

제목 진정한 회신

1. 귀하께서 93. 12. 30.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사형수 강순철 사면요청 탄원서에 대한 답신입니다.

2. 귀하의 진정취지는, 살인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진정인의 사형집행만이라도 면제해 주어 그가 계속 교도소내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 바,

3. 사면이나 감형은 사면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면등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많이 접수되어 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 무 부 장 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1101-0101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3호 TEL. : 741-4350~1 FAX. : 766-2427

청원서

김영삼 대통령 귀하

1994. 4. 1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 본 위원회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기에 헌법에 위배되며 범죄자가 회개와 고화로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고, 으관이나 남용의 판결로 인해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 집행명령 유보에 대한 청원서를 1993. 12. 7. 자르 귀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본 위원회는 새정부가 출범이후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형집행 가능의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범죄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사형집행이 정당화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 사회의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현재 형이 확정된 모든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유보해 주시고 위 시형적 유보 기간 중에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 이명남  
( 직인생략 )

법 무 부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3-7053 / 전승

문서번호 검이61070-437

시행일자 1994. 4. 18.

수신 이명남 귀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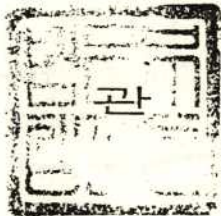
제목 진정한 회신

1. 귀회가 94. 4. 14. 우리부에 제출하신 사형제도와 관련된 건의서에 대한 답신입니다.

2. 귀회의 건의취지는,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성 회복기회를 영구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이니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그 집행을 유보하고 그 기간중에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거쳐 종국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중신형을 채택해 달라는 것인 바

3. 1993. 12. 13. 귀회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시어 이미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귀회의 의견을 당부의 장기과제로서 계속 연구 검토할 것을 통보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 무 부 장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연도별 통계(1948년 - 1993년)

연도	집행자 수	연도	집행자 수	연도	집행자 수
1949년	3	1966년	37	1983년	19
50년	.	67년	7	84년	.
51년	2	68년	22	85년	11
52년	10	69년	35	86년	13
53년	19	70년	18	87년	5
54년	60	71년	14	88년	.
55년	32	72년	32	89년	7
56년	52	73년	9	90년	14
57년	15	74년	59	91년	9
58년	14	75년	18	92년	9
59년	48	76년	26	93년	
60년	16	77년	24	94년	
61년	55	78년	.		
62년	27	79년	11		
63년	46	80년	9		
64년	13	81년	.		
65년	14	82년	23		
계	728				857명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죄명별 통계(1948년 - 1993년)

죄 명	형집행자 수
살인	215 명
강도 살인	193
강간 살인	10
존속 살인	24
살인 사체유기	35
방화 살인	7
상관 살해	26
초병 살해	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183
간첩	98
간첩 살인	2
특별조치 위반	15
비상조치 위반	16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8
법령 5호 위반	2
특수범죄	15
특가법 위반	2
부정선거	3
사기	1
계	857 명

사형선고 및 집행비교(1948년 - 1993년)

\* 사형선고 962 명 (군106명 포함)

사형집행 857명  
 무기감형 21 "  
 병사 21 "  
 자살 2 "  
 탈옥 4 "  
 특사 1 "  
 기탁 6 "  
 미집행자 50 "

계 962 명



제 78회기 총회 인권위원회사형제도폐지위원 명단

구 분	이 름	직분	노 회	교 회	연락처
위원장	이명남	목사	충남	당진	0457-674-2476
서 기	김영기	목사	경안	성소병원	0571-50-8802
총 무	김진옥	목사	인천	부평제일	032-525-9272
위 원	이정일	목사	서울	광장	455-5011
위 원	김상해	목사	경북	제3	053-562-9172
위 원	금영균	목사	서울서	성덕	324-7724
위 원	문장식	목사	서울북	상문	907-8600
위 원	김태규	목사	서울동남	한빛	477-7610
위 원	허달수	목사	서울서남	오류동	611-0090
위 원	김정웅	목사	충북	명암	0431-3-7601
위 원	김수진	목사	군산	경사	0653-856-6775
위 원	소의수	목사	서울	금성	234-4901
위 원	임윤석	목사	서울남	성도	864-7711
위 원	정만호	장로	서울서북	기자촌	359-8894
위 원	김병헌	장로	평양	반석	733-3959
위 원	오형태	장로	서울북	신성북	474-9597

인권 자료	
등록일	분류기호
	B3 29

#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

-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 1997년 5월 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당

주 최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

-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 김상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

## 제 1 부 개회사 및 행사의의 소개

### 개회사

허창수 신부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장  
김태규 목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인권위원장

### 격려사

김동완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그외

### 행사의의 소개

이명남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장

## 제 2 부 주제발표및 토론

사형제도의 역사및 세계적 현황 소개 - 김일수 (고려대 법대 학장)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 - 법무부

사형제도의 문제점 제기

- 문장식 목사 (KNCC 인권위원회 사형폐지분과 위원장)

사례및 체험발표 - 박삼중 (자비사 주지, 전국재소자교화후원회장)

질의및 토론

# 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적 현황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적 현황) 김일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

# 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적 현황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 I. 序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형제도의 역사는 사형폐지의 역사」라는 명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사형폐지의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1960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극동지역 국제연합 인권세미나가 열렸을때만 해도 각국 대표들은 대체로 아시아·극동지역에서 사형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그 폐지를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1977년 12월 8일 유엔총회는 “사형제도의 분야에서 추구되어야 할 주요목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정신에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죄목을 전향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1977년 12월 11일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동·남북미와 카리브해 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사면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스톡홀름에 모여 “사형제도의 폐지는 국제법상 선포된 협약들을 구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치”임을 확인한 뒤 “사형제도를 절대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세계의 모든 정부는 사형제도를 지체없이 철폐할 것과 국제연합은 사형제도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소위 스톡홀름선언(declaration of Stockholm)을 채택했다.

그 후에도 1980년 8월 25일 개최된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회의에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와 상호협회의 지위에 있는 42개 인권관련 민간국제기구는 “모든 사형존치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며 유엔총회가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선포할 것을 요망하고 모든 인권관련 민간기구들이 사형제도폐지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동성명서를 제출했다. 1989년은 국제사면위원회가 범세계적인 사형폐지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같은 해 5월 30일 우리 나라에서도 최초로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20세기는 분명 인간성에 대한 갖가지 모독과 대량살상을 기록한 혼돈과 갈등의 세기였다. 반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가치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세기이기도 하다. 사형폐지를 위한 끊임없는 국제적인 노력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생명의 존귀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발로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 II.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그 기원을 부족사회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던 종교적 제사의식과 이에 따른 희생의 제물에 두고 있다. 그 후 국가제도가 갖추어 지면서 사형제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한 합법화된 제도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사형제도의 역사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古代法은 史料가 뚜렷하지 않아 자세치 않으나, 最古의 刑律은 고조선의 八條禁法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전해 오고 있는 三箇條를 살펴보면 “相殺 以當時 償殺, 相傷 以穀償, 相盜男 沒入爲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 五十萬”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에 대하여 죽음으로 갚는다는 일종의 탈리오사상을 엿볼 수 있다.

夫餘에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간음자·투기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였고, 東瀛에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다. 이와 같이 古代의 刑律制度를 보면 대개 탈리오사상에 입각한 엄한 형벌을 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국가의 체제를 형성한 三國時代에는 私刑罰權이 國家的 公刑罰權으로 흡수됨에 따라 裁判도 민중재판으로

부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장되게 되었다. 高句麗에서는 小獸林王 3년에 처음으로 율령이 공포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唐書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모반자를 기둥에 잡아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을려 태운 후에 목을 베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엄격한 법률제도가 시행되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모반자 뿐만 아니라 城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한 자, 패배한 자는 斬刑에 처하는 守成降敵 臨陣敗北罪가 있었으며 살인자, 겁탈자도 사형에 처하였다.

百濟의 형사제도를 보면 謀叛, 退軍 및 살인자는 斬刑에 처하였으며 赦免制度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羅의 刑律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眞平王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왕이 재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新羅時代의 형벌을 보면 三族을 滅하는 族刑, 車裂刑, 四支解刑, 斬刑, 自決을 명령하는 自盡刑 등이 있었다. 三國時代의 死刑制度를 평가한다면 私刑罰에서 公刑罰로 進化하면서 국가의 사법제도가 체계화되어 갔으나 刑律은 여전히 威嚇的·專制的이었으며 그 刑行도 사형을 주로 한 殘酷無慈悲한 것이었다.

高麗時代의 刑事法制에 대해서는 高麗史 第84卷에 기록된 高麗朝刑律에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절도의 경우에 五貫以上에 달하면 사형에 처하며, 大惡이라 하여 부모나 친족에 대해 살해나 상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형에 과하였으며, 고의로 放火한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사형에 처했음을 규정하고 있다. 高麗刑法이 비록 많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의 정도도 威嚇로 일관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균형을 지켜왔고 민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왕권에 의하여 취해진 점 등은 발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時代의 刑法典은 중국의 大明律을 모방한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을 들 수 있으며, 司法機關으로는 중앙에 法四(형조, 사헌부, 장예부, 한성부)가 재판을 관장하였다. 사형이 과해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王權에 대한 침해는 예외없이 사형으로 처형되었으며 主犯과 從犯을 불문하고 陵寢處斬할 뿐 아니라 범죄인의 父 또는 子도 일정한 연령(16세)이상이면 絞殺刑에 처하고 그 외에도 전가족 일가가 멸망할 정도로 그 처벌의 범위는 넓다. 또 관리가 私怨으로 무지한 사람을 囚禁하여 致死케 할 경우에는 絞刑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강간의 경우나 일정신분에 있는 가정의 良妻와 姦淫 등도 모두 極刑에 처하고 있고, 父母·祖父母에 대한 罵罰, 奴婢의 家長에 대한 罵罰 등도 역시 極刑에 처하여 신분형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謀殺은 물론이고 謀殺傷害致死도 사형에 처하며 誣告의 경우는 反坐法이 적용되어 被誣告人이 사형으로 처단된 경우 誣告人 역시 사형에 처해졌다. 朝鮮時代의 刑法은 인명을 존중하고 형을 세분화한 과학적·합리적인 면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階級社會의 특색에 따른 신분형 그리고 王族에 대한 犯法 등은 엄히 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양형법이 繼受된 것은 한일합방 후 1911년 朝鮮總督府令 第11號 朝鮮刑事令으로 일본형법을 依用하게 되면서부터이나 同刑法은 天皇 등 皇族에 대한 범죄, 內亂, 外患, 間諜 등의 정치적 범죄와 放火 등의 사회적 범죄, 殺人 등의 개인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였고 그 法條는 16個條에 달하였다.

해방 후 실시된 미군정하에서 軍政法令 제21호로써 종래 한국인에 차별대우를 했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일본형법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 후 우리의 형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여망에 따라 1953년 9월 18일 공포, 그해 10월 3일부터 시행된 것이 현행형법이다.

형벌의 완화가 문명의 역사적 법칙이며, 세계의 보편적 현상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反共法(廢止), 1961년의 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法律, 1980년의 國家保安法, 1966년의 特定犯罪加重處罰에 관한 法律,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형규정을 계속 확장하여 왔다.

개정 전 형법에서 법정형이 사형으로 규정된 범죄로는 내란죄(제87조),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공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2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 살인죄(제250조),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3항) 등이 있었다. 이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훨씬 확대되어 있었다.

예컨대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조직(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취유인죄(제5조의 2), 도주차량운전자(제5조의 3), 상습강도(제5조의 4), 강도상해·강도강간의 제법(제5조의 5), 특수강도강간 등 소위 가정파괴범(제5조의 6), 관세법위반(제6조), 통화위조(제10조), 마약법위반(제11조) 등이 있으며, 이밖에 국가보안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범죄 중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與敵罪와 군형법상 軍事反亂罪 뿐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상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형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죄에서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형법은 형벌완화의 측면에서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제177조), 교통방해치사상(제188조), 음용수혼독치사상(제194조), 강도치사(제338조 후단)의 죄에서 사형을 삭제했으나,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강간등살인죄(제301조의 2 전단)에 사형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 最古의 成文法 중의 하나인 함무라비법전은 第1條에 이미 사형을 규정하여 고대형벌의 잔혹성 혹은 형벌 중심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대략 37個條에 해당하는 범죄에 사형이 과해지고 있다. 그 處刑方法도 수장, 화형, 신체절단 등의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함무라비법전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단계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동해보복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구약성경에서 형벌규정은 창세기에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법규범이라기 보다는 도덕규범의 성질이 더 강하였다. 실질적으로 법규범의 성질을 띤 형벌규정은 출애굽기 이후였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은 후 비로소 본격적인 형벌규정이 나타났다. 구약성서의 법률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모든 범죄는 인간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생활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법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법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아야 한다.

모세율법은 모두 6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형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 20장~23장, 레위기 20, 24장, 신명기 19장에 많이 나타난다. 사형이 과해지는 범죄를 보면 J. D. Ehrlich는 36개 범죄에 대해 사형이 과해진다고 한다.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로는 謀殺, 유괴부모에 대한 저주 및 불순종, 간통, 동성애, 근친상간, 위증 등의 도덕적 범죄와 거짓예언, 안식을 지켜지 않는 것, 매신, 우상숭배·마법이나 요술 등의 종교적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사형방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刑, 火刑, 斬首, 絞殺 등이 있었다고 한다.

모세율법에서는 잘못된 사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장치가 있었으며, 함무라비법전과 달리 인간존중의 배려가 배풀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 사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형범죄들이 과연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의 근거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구약성경의 사형은 사회위생적인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것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름 공동체의 회복, 즉 범죄와 사회, 사회와 하느님과의 관계회복의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대분류는 고대, 공화정 후기, 원수정 시대, 전주정 시대로 할 수 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이 十二表法이다. 十二表法은 정무관의 제안에 의한 민회의 의결이 없으면 시민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갖고 있으며,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보면 모반, 살인, 저주, 방화, 위증, 심판인 및 중재인이 매수되는 경우, 야간에 타인의 경작지에 방목하여 목초를 먹게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사형집행방법으로는 焚殺, 絞殺 및 타르페우스 언덕에서의 落死 등이 있었다.

第2期인 공화정 후기에는 형사재판권이 원칙적으로 민회에, 예외적으로 정무관에 있었으나 후에는 常設審査會制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 第3期에는 원로원이 정치범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민회에의 提訴에 의하지 않고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구살, 扼殺, 언덕에서의 落死 등이 있었으며 사형에 처한 범죄의 수도 공화정시대에 비해 증가되었는데 이는 왕권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第4期의 형벌은 지극히 엄격한 성격을 띠었으며 사형규정은 콘스탄티누스 및 그 후의 제황제에 의한 입법에 의해 증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로마의 사형제도는 원시적 복수의 단계를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의 권력과 인간의 존엄성이 사형제도에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근본적인 고찰이 없었다.

中世에는 왕권보호를 위해, 그리고 몰락해가는 봉건세력들의 최후저항의 한 방편으로 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기였다. 사형집행방법으로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차열형 등의 잔인한 방법이 행해졌으며, 말별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방법이나 개미나 파리에 의해서 천천히 죽이는 방법등도 사용되었으며 군중들 앞에서 공개집행되었다.

우리나라나 서양을 불문하고 중세까지의 사형의 실태를 볼 때 왕권을 배경으로 하는 계급적 지배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아무런 이론적 기초가 없이 전세계에 걸쳐 주된 형벌로써 자행되어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산업혁명,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치는 가운데 시민계급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중세 봉건제도에의 속박을 부인하고 인간의 존엄·자유·천부인권사상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계몽사상가들은 중세의 잔인한 刑罰權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하였으며, 사형범위의 축소를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16, 17세기에도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였다.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베카리아의 犯罪와 刑罰이란 책이 출판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死刑存廢에 관하여 격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근대형법학 성립 이후 사형제도의 역사는 廢止를 향해 끊임없는 투쟁을 해 오고 있다.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배경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적당한 代替刑罰을 추구해가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 III. 사형의 세계적 현황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의 집행방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잔혹하였으나 근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이전에는 대체로 斬首·五殺·車裂·絞殺·陵遲處斬·戮死·追死·賜藥 등이 있었으며, 근래 각국의 사형집행방법으로 絞首(hanging)·銃殺(shooting)·斬首(guillotine)·電氣殺(electrocution)·가스殺(lethal gas)·縊殺(strangulation)·投石殺 등이 있다. 현행형법은 고수형을 규정하고 있고(제66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군형법 제3조).

오늘날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형폐지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die delitti e delle pene)에서 사형을 잔혹하면서도 抑止效果를 거둘 수 없는 형벌이라고 비판한 것이 효시가 되어 J. Howard·M. Liepmann·E.H. Sutherland·Montesquieu 등 많은 동조자를 얻었다. 물론 베카리아는 모든 사형을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政治犯·國事犯에 대해서 사형을 과할 권리를 국가에 승인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전통은 최근까지 벨기에·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위스 등이 일반형법전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서도 계엄법이나 국가긴급법에서 일정한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존치시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형을 형사범영역에서 전면적으로 폐지한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1985년)·바티칸(1969년)·베네수엘라(1893년)·산마리노(1865년)·1988년 현재 포르투갈(1976년)·콜롬비아(1910년)·덴마크(1978년)·핀란드(1972년)·룩셈부르크(1979년)·네덜란드(1982년)·노르웨이(1979년)·필리핀(1987년 폐지, 1995년 재도입)·스웨덴(1972년)·서독(1949년)·동독(1987년)·오스트리아(1950년)·프랑스(1981년)·루마니아(1993년)·남아프리카공화국(1995년) 등 55개국이다. 특히 루마니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대법원이 사형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무효화시킨 예이다.

사형을 군형법상이나 전쟁시의 비상입법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형법상의 보통범죄에 대해서는 폐지한 국가로는 역시 1988년 현재 아르헨티나(1984년)·브라질(1979년)·캐나다(1976년)·이스라엘(1979년)·이탈리아(1954년)·멕시코(1971년)·스위스(1942년)·스페인(1978년)·영국(1973년) 등 18개국에 이른다.

그밖에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는 볼리비아(1974년)·벨기에(1950년)·그리스(1972년)·마다가스카르(1958년)·파라과이(1928년)·스리랑카(1967년)·터키(1976년) 등 27개국에 달한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이 집계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1997년 3월 현재 법률상 또는 실무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수는 100여개국에 달한다. 사형폐지국들이 사형을 폐지하게 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사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생명권을 박탈하는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에도 반한다.

둘째, 사형은 응보사상에 입각하여 범죄에 대해 분노를 표시할 뿐 범죄인의 개선과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셋째,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데도 사형제도를 통하여 살인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넷째, 사형은 오관을 한 경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다섯째, 사형은 통상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犯罪抑止力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형폐지에 관한 대법원판결이유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형폐지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범죄의 발생건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검증된다. 특히 범죄인은 범행시 사형의 위협을 의식하면서

잔학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섯째, 범죄원인은 범인의 악성 내지 반사회성이지만, 사회환경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형은 모든 범죄원인을 오직 범죄인에게만 돌리려는 불합리한 형벌이다.

일곱째, 사형은 범죄인의 죄값을 넘어서 범죄인의 가족·친지나 범죄인과 종래부터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온 많은 이웃들에게도 생명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는 가혹성을 지니고 있다.

여덟째, 사형은 종종 인종 및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한 啓蒙主義 사형폐지론이 비롯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계몽사상가들은 여전히 사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로크·칸트·비르크마이어 등이 대표적이며, 오늘날에도 사형이 存置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심지어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조차 重犯罪의 효과적인 방지책으로 사형을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간혹 다시 일고 있다. 실제 필리핀은 1987년 사형을 폐지했다가 1995년 재도입하였고, 마찬가지로 최근들어 폐지국에서 재실시국가로 돌아서고 있는 국가로는 캄보디아·파푸아뉴기니아·네팔 세나라를 더 꼽을 수 있다.

아직도 사형을 존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1997년 3월 현재 94개국에 달하고 있고 매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당수 있다. 사형존치국들이 내세우는 死刑存置論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死刑은 凶惡犯에 대해 抑止力을 갖는다.

둘째, 刑罰의 本質이 應報인 이상 反社會的 犯罪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의 道德的 反應의 표현으로서의 死刑은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尊嚴과 價値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死刑制度는 일반인의 正義觀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 IV. 結論

우리 나라의 多數說에 따르면 死刑存置問題는 정치·문화·사회적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綜合的·相對的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현재 우리의 상황하에서 볼 때 死刑廢止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 또한 이와 색다른 논지로 死刑이 憲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범죄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死刑 자체가 인간의 尊嚴과 價値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死刑은 또한 犯罪抑止力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生命權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死刑은 責任原則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종래 우리 대법원 판결(大判 1967.9.12, 67도988) 및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다수의견(헌재 1996.11.28, 95헌바1)도 이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死刑制度는 명백히 인간의 尊嚴性保障要求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應報的 思考의 잔재에 불과하다. 사형으로 범죄진압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민주헌법질서의 이념과 일치할 수 없는 독선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자유적·합리적·인도적 형사정책의 노력을 선불리 포기하려는 미신적 사고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미국연방대법원의 死刑判決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Harry Blackmun판사(1970~1994년 미연방대법원판사역임)가 “형벌은 恣意性, 차별, 번덕과 오류의 잔재들로 얽혀 있고, 특히 판결에 의한 生死與奪에는 인종적 편견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나는 금후로 더 이상 사형기구의 서툰 수리공노릇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이유에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법의식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나마 1989년 5월 30일 우리나라에서도 범조인과 종교인을 주축으로 하여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死刑制度가 존속되는 동안이라도 우선은 브라질·인도네시아·이스라엘 등과 같이 死刑犯罪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법, 벨기에처럼 명문으로 死刑制度를 규정하되 현실적인 시행은 억제하는 방법, 中國처럼 일정기간 死刑의 집행을 유보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無期刑으로 전환하는 등 死刑執行을 제한하는 방법, 스위스軍刑法처럼 사형선고에 法官의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등 사형선고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시급히 死刑廢止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속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역사속에 치여 역사속에 매몰되고 만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나라도 역사의 흐름속에 휩쓸려 퇴적하는 돌무더기처럼 문명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속에 분명 사형없는 사회의 비전을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이 역사의 흐름에 앞서서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사형제도의 문제점

문장식 목사 (KNCC 인권위원회 사형폐지분과 위원장)

사형은 사회질서 유지 수단 중 하나로 국가가 관행적으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잔인한 사형을 통해 위화감을 주어 살인범죄를 줄일 수도 있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런 관행적 맹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헨리 8세 시대(1509-1547)에는 총 7만2천명이 처형되었고, 엘리자베드 1세(1558-1603)때에는 8만9천명이 처형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을 처형해도 당연시되었고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형폐지를 주장한데서 시발로 근대 사형존폐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사형제도는 선진국들중 대부분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고 세계각국이 폐지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이 폐지된 나라는 현재 약 10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집행률이 세계에서 높은 나라중에 속하여 인권국가로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사형장에 입회 목사로서 사형수 수십명의 최후를 목격하면서 사형을 증오했다. 그래서 나는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형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 1. 사형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가장 신성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인간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은 다른 어떤 법익과의 비교형량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국가라 할지라도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생존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이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도록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사회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생명을 경시해 온데서 비롯된 점이 크다고 본다. 생명을 말살하는 사형은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도적 행위임으로 인도적 차원에서든 허용될 수 없다.

## 2. 오판과 남용의 가능성

돈없고 힘없는 약자들의 항변은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때 오판과 남용의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형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한다 하여도 재판부 역시 인간인 만큼 오판이 가능할 수 밖에 없다. 오판으로 사형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을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겠는가. 사형이 없어야 할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오판의 가능성 때문이다. 사형은 특히 정적 제거 수단으로 오용될 때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정권때 처형된 조봉암씨, 1975년 4월 박정희 군사독재하에서 8명이 처형된 인혁당 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사형이 악용된 경우가 많다.

## 3. 사형지지 여론에 의한 시기상조론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흉악범을 처형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만일 사형이 없으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지고 공포분위기에 싸이게 될 것이며 옹보적 차원에서든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여론에 의한 사형폐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국민여론에 의존하기 보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명권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서 사형을 부정하도록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헌법위원회에서 위헌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사형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늦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극형을 통해서만 범죄억제책이나 정의가 수립된 것이 아님이 확실시 되고 있는 한 사형대신 중신형이나 외국의 경우처럼 100년-200년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미국의 상습강간범이 지난 3월 3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고기록인 징역 6백25년형을 깨고 11차례의 중신형과 함께 징역 70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를 접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오판을 막기위해서도 사형만은 없어야 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지난 1995년 한해동안 41개 국가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으며, 79개 국가에서 모두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지난해의 수치를 분석해보면, 소수의 몇개국에서 대량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중국에서 모두 2,190명이 집행되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192명, 나이지리아에서 100명 이상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다고 한다. 이 3개국의 수치는 지난 1995년 한해동안 전세계 사형집행 수치의 총 85%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통계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5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6명의 청소년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 숫자는 5개국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 등으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성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옹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용보적 범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범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치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이상인 100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은 존치되고 있다. 1988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조만간 사형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 줄 어떤 긍정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형제도와 범죄율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 중 1988년 유엔의 보고서는 "모든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범죄율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찬반이론 역시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다음은 사형제도의 부당성과 부적절성, 그리고 반 인간적인 형벌임을 입증하는 논거이다.

## 1)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지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입증된 적은 없었다. 1980년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의회'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형의 억지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1949-53년간의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에서 "우리가 검토한 어떤 자료에서도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1983년의 한 연구는 사형을 폐지한 14개국의 단기, 중기, 장기의 살인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조사대상국의 절반 이상에서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형집행 직후 살인율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63년간 뉴욕주의 월간 살인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다음달에 평균 두건의 살인사건이 더 발생하였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많은 범죄들이 엄청난 감정적 고조상태, 공포 또는 약물과 알콜의 영향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캐나다에서는 살인에 관해 사형을 폐지하기 이전인 1975년에 인구 십만명당 3.09의 살인율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에는 2.41로 떨어졌으며 이후 이 수치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지 17년이 지난 1993년에는 살인율이 인구 십만명당 2.19였으며, 이는 1975년보다 무려 27%가 떨어진 것이다. 이 수치는 캐나다에서 1973년에 이어 전체 살인 건수가 두번째로 떨어진 것이다.

## 2)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니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사형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흔히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범인에게 책임소재를 가볍게 지우고 있다. 범죄자들은 오랫동안 폭력범죄는 흔히 빈곤, 실업, 알콜중독, 결혼가정 등과 같은 여타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해 왔다. 이런 문제들은 사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 3) 사형과 종신형을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 있는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 4) 사형은 종종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경우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범죄의 성격때문이 아니라,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 피부색, 또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의 피부색 또는 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가 많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모든 사형의 80%는 흑인들에게 린치를 통해 죽이는 긴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텍사스주에서 집행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의 사형논쟁에 있어서 인종문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 상원의 회계위원회에서는 최근에 28건의 상이한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인종문제가 사형의 모든 단계 -고소, 선고, 집행- 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인종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조지아주에서 백인을 죽였다면 흑인을 죽였을 때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7배나 높다. 뉴욕타임즈는 1면 머릿기사로 한 사형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이 이야기가 머릿기사로 처리된 이유는 지난 50년간, 그리고 1,000건이 넘는 사형집행중에서 처음으로 백인이 흑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백인은 모두 백인만을 살해한 아홉번의 전과가 이미 있었다.

또한 사형은 한국의 경우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1958년의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양명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1967년의 동백림 사건, 1974년의 인혁당사건, 1980년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이 현대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형선고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은 세계에서 군사쿠데타 이후 이전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소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있다.

####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사형은 최종적인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무고한 사람이 일단 처형되어 버리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이 형벌의 한 형태로 남아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사형된 후 무고함이 밝혀진 사형수의 사례는 여러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 심지어 사형선고후 수시간 내에 사형이 행해져서 항소나 사면청원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다.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 사형사건에 대한 재심리 결과에 의하면, 1972년 이래 4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죄인 사람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 미국의 1987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1900년에서 1985년 사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 모두 350명이 무죄임이 나타났다. 몇몇 수인들은 사형집행 직전에 무죄가 확인되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들 중 23명은 이미 집행된 후였다. 1993년 10월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72년부터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 중 무죄석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은 불공정한 법의 집행을 밝혀낼 수 있는 노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

####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대중의 사형지지도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똑같은 결과의 범죄, 그리고 동일한 상황의 범죄라 해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미국 및 여타의 여러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들중 실제 사형을 선고받는 죄수들은 비교적 소수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0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약 200명이 사형집행을 위해 추려진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단지 소 일곱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동물원의 호랑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수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 7) 사형과 국민여론은 무관하다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형폐지 운동과정을 통하여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단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접하기만 하면 그 주장은 다소 변화된다. 정치

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대중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정치가들이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대중의 존경을 잃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 미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것만을 물을 경우, 압도적으로 -때로는 79%나- '예'라고 답한다. 그러나 질문에서 선택의 범위가 사형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두가지로 넓어지게 되면 대부분은 종신형을 택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범죄자에게 구금과 더불어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가 덧붙여진다면, 사형 찬성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사형찬성률이 24%까지 떨어졌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사면없는 종신형이라는 대안과 더불어 강력범죄의 원인을 형성하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와 동시에 확실한 검거 및 유죄판결이 증가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형제도의 찬성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 8)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불어 사형제도 또한 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이다. 왜냐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도 정밀한 항소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사형은 돈조차 절약해주지 못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예방책들과 재심청구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한 사람을 감옥에 40년 동안 수감하는데 드는 비용의 두배이다

#### 9) 세계는 지금 사형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몇년간 세계는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인권협약을 수용함으로써 사형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선택의정서"는 국가에게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29개국만 비준하였으며 4개국에서 비준할 예정으로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 6의정서"에 유럽의 23개국만 비준하였으며, 3개국만 비준할 예정으로 있다.

사형은 차별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살인행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역사에서 폭력과 공포에 의한 지배를 한 사람들이 항상 이 사형제도를 열성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여타의 다른 인권들을 불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국가들과 종종 일치한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모든 인권을 위한 투쟁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폭정을 몰아낸 나라들에서 교수대와 총살대가 사라지는 등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예들 또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와 사형이 폐지된 사회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개방된 질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사형수

박삼중 (자비사 주지, 전국재소자교화위원회장)

67년부터 30년 동안 나는 사형수 3백여명을 만났다. 사형수는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집행된다. 사형이 확정되고 난 후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주장해도 살아날 길은 없다. 그런데도 사형이 확정되고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형수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날 길을 찾으려는 것일까,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형수나 계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잔혹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하고 그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나는 고문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 고문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그런데 얼마나 고문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면 거짓으로 증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게 되는 것일까. 고문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미 고문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형수 얘기들을 해보겠다.

우선 여인 토막살인사건의 살인범 이양길의 사연은 이미 여러번 책자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동생의 끈질긴 집념과 강신명 목사의 구명운동으로 사형집행이 연장되긴 했으나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고문의 실체가 숨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이양길이 아닌 다른 용의자 한명을 검거했다. 물론 잡힌 용의자는 살인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용의자로 잡혀와 심문을 받던 중에 심한 고문을 못이겨 자신이 살해했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법정에서 시체의 뼈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그 용의자가 살인범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양길이 체포되면서 그 살인범의 진범이 바로 이양길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뼈는 사람의 뼈가 아니라 개의 뼈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용의자였던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음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무고한 삶이 사형을 당할 뻔 했는데도 경찰은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회박한 책임의식을 드러냈다.

청계리 농협청계분소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으로 사형수가 되었던 최계만씨 역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죽음의 나락으로 한동안 떨어졌었다. 조선일보 김창수 기자는 최계만 사건을 자세히 다시 조사한 후 재판에 의문을 제시하며 최계만이 살인범이 아님을 사회면에 두 번이나 기사화했다. 범행에 사용했다는 칼도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심한 고문에 못이겨 내가 살인을 했다고 거짓자백을 하자 고문했던 경찰이 칼을 하나 가져 오더군요. 물적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칼 손잡이에 내 지문을 묻히고는 이 칼을 어느 곳에 던져놓을테니 내가 숨긴 것처럼 해서 찾아내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칼을 던져놓은 곳의 약도를 그려주더군요.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것처럼 칼을 찾아내고 현장검증을 해줬습니다.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증거까지 조작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최씨의 얘기를 듣고 나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경찰이 인간성의 존엄성마저 짓밟고 생명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런 경찰이 많은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사건에만 오판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건도 이런 오판과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고문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때까지 집행이 보류되었으면 하는 사형수 얘기를 해보겠다.

<사형수 김선자는 과연 희대의 악녀인가 아니면 누명을 쓴 피해자인가>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기사화까지

되었던 김선자. 그녀는 88년 독극물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저는 죄가 없으니 살아야 한다”는 그녀의 얘기는 이랬다.

그녀는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들과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데 돈을 빌려간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돈을 갚으려고 하니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돈 받는 일이 급할 것도 없고 한창 고스톱에 정신이 팔려있던 터라 다음에 만나자고 했으나 친척은 가까이 와 있으니 부득부득 만나자고 했다. 할 수 없이 친척을 만나러 갔더니 수표로 돈을 주면서 나머지 돈은 다음에 줄테니 오늘은 이것만 받으라고 해서 일부 돈만 받고 돌아오려고 했다. 그때 친척의 옆에 있던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드링크 3병을 꺼내 나눠주길래 마시고 헤어지면서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그 친척이 독극물로 죽었다. 그녀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독극물로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 그녀의 아버지와 여동생 등 주변의 6명이 모두 청산가리에 사망했거나 중독됐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선자씨는 6건 사건에 대한 살인 및 미수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강도 살인죄를 인정,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두 사건에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벗길만한 뚜렷한 반증을 내놓지 못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사형수가 또 한명 있다. 90년 2월에 정부를 통해 정부의 남편을 극악으로 죽인 혐의로 구속된 한중도씨는 정부 임여인과 함께 사형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씨는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부산의 한 카바레에 놀러왔다가 임여인을 알게 되었다. 임여인은 당시 과부라고 자신을 속였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깊은 관계까지 갖게 되었다. 어느날 한씨가 임여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자 어떤 남자가 받았다. 그때서야 임여인은 자신은 유부녀이고 남편이 중동에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들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웠고 임여인은 가끔씩 남편에게 손찌금을 당하곤 했다. 그런던 중 임여인은 한씨에게, 남편이 외국에 나가 술을 많이 마셔 눈을 버렸는데 눈을 치료하기 위해 시골로 가서 썰을 잡아 보약으로 먹이려고 하니 썰을 잡아 청산가리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한씨는 그 약을 구해다 주었다. 임여인은 그 약으로 남편을 독살했다. 경찰에 잡혀간 한씨는 썰 잡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구해줬을뿐 살인교사를 한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여인도 그때는 한씨가 그 약으로 남편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한씨가 무혐의로 풀려나려고 하자 갑자기 한씨와 남편을 죽이기로 짰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씨가 법정에서 호송차 안에서 임여인을 만나 왜 허위진술을 했느냐고 따져 물으니 “그렇게 하면 사형은 면하게 된다고 수사관이 말해주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다. 한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자 부산고법 형사2부는 죄를 누우칠 줄 모르는 파렴치범이라 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부산변호사협회에서 재조사를 했고 법무부장관에게 한씨의 사형을 연기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열쇠는 임여인이 쥐고 있다. 임여인은 천주교 신자로 바뀌었는데 고해성사를 통해 한씨가 직접 살인교사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씨의 결백이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답답한 일은 법률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그냥 포기하는데 있다. “유부녀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이 죄라면 백 번이라도 죽어도 좋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데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는 한씨의 결백호소가 재판관한테 그를 집행하면 나의 가슴은 또 어떻게 될까.

한편 우리나라 사형수 이외에 외국인 사형수들도 내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파키스탄인 2명은 이태원에서 저회들끼리 폭력을 일으키다가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살인범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건국 이래 외국인이 사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폭력에 가담은 했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들의 눈물호소를 들으면서 그들이 파키스탄인이 아니고 일본인이거나 미국인이었으면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나 오심 오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오심이 바로잡혀도 소용이 없다. 사형대신 종신형을 최고 형벌로 하자. 그래서 진범, 진실이 밝혀지면 그 진실을 회복시켜주면 되지 않겠는가.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한 것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엄성이 있다. 국가라고 해서 천부의 인권을 유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706-600 경북체신청 직영우체국  
 R.C.O. Box 36  
 Tel. (053) 426-2533  
 Fax.(053) 422-1956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5	1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국제앰네스티 운동이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최대의 민간인권운동단체입니다.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 정치적 집단,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 또는 특정 종교에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활동합니다. 앰네스티운동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며 전세계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됩니다.

## 앰네스티의 수임사항(Mandate)

-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양심수란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신념, 피부색, 성별, 민족적 인종적 기원,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모든 정치적 수인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 촉구
-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반대
- 모든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 전세계 난민을 위한 활동
- 인권교육
- 그외 기타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 앰네스티운동의 기원

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넨슨씨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1961년 5월 28일 그는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신문기사에서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감된 전세계 수인들의 석방을 위해,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탄원을 위한 생명의 발견에 함께하기를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반향으로 런던의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한 앰네스티는 현재 세계최대의 민간인권운동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 앰네스티는 재정이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회원조직입니다.

재정은 전적으로 회원분담금과 기부금, 후원금,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앰네스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기부금은 앰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은 연례재정보고서를 통해 공개됩니다. 현재는 160여개국에 백사십만 이상의 회원과 수백만명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네스티는 50여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중동지역등에 6,000개 이상의 지역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 앰네스티의 모든 조사는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반합니다.

앰네스티는 인권침해를 매우 엄밀하게 조사합니다. 런던에 있는 국제사무국-약 50개국에서 선발된 300명 이상의 직원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소식통으로부터 인권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합니다. 조사국은 수인이나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 뿐 아니라, 수백종의 신문, 언론잡지, 정부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 법률가와 인도주의적 단체의 보고를 모두 수집합니다. 또한 현장조사와 재판참관을 위해 그리고 수인과 정부당국을 만나기 위해 해당국에 정기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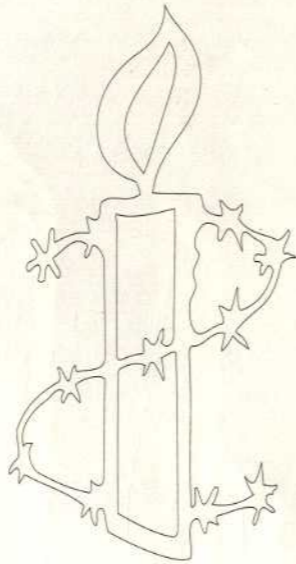
## 세계속의 앰네스티

앰네스티는 현재 유엔(UN), 유네스코(UNESCO), 유럽의회(EC), 미주기구(OAS), 아프리카통합기구(OAU) 등과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공로로 앰네스티는 1977년에는 노벨평화상을, 1978년에는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모욕적인 처우, 폭력과 고문에 항거하여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앰네스티는 자유와 정의의 기초,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했다."  
- 노벨평화상 수상 이유, 1977년

#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an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발행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행인 : 허창수  
발행일자 : 1995년 2월 25일

이 자료는 한국정부가 사형을 조속히 폐지하기 위해서 제작한다.

# 국가의 살인 행위, 사형제도

생명권(The Rights of life)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인권관련 규준들은 생명권을 확인하고 있는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세의 국가들이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약(B협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는 이러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계의 국가들에게 국가의 무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으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두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성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응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형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범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형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론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764년 백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사형폐지론은 시작되었으며, 그후 길핀, 블랙, 롬브로소, 리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챔블리스(Chambliss)는 1951년부터 1966년 사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집행된 수인의 숫자와 살인율을 비교하여 사형집행률이 현저히 감소해도 살인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바버(Barber)와 윌슨(Wilson)이 퀸스랜드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형집행률과 살인율간의 관계는 정비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셀린(Sellin) 교수는 1961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가진 주들의 살인율 비교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살인율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프랑스 판사인 안셀(M.Marc Ancel)씨는 1960년 유엔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4개국과 오스트리아의 1개 주 그리고 미국의 6개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88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범죄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로저 후드박사(Roger Hoo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9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1994년 1월 현재 세계 9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53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16개국,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1개국 - 그 폐지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94년 1월 현재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으며 93년동안 세계에서 61개국의 3,283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의과의 비교형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형은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 전기의자, 극독주사, 총살, 돌로 쳐죽이기, 가스실 등이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 그리고 사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게 한다.

셋째,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형벌의 기능인 응보, 범죄억제 그리고 교도의 측면에서 한 수인을 사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미국,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 조사된 연구내용들은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보다 효과적인 범죄억제기능을 가진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사형은 사법적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사형존치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종종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정권하에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좋은 예이다.

여섯째, 사형제도가 그 적용과정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종류의 살인을 행한 어떤 수인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고 어떤 수인은 사형집행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빈곤계층, 소수인종, 소외집단에게 편중되어 적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단지 소일곱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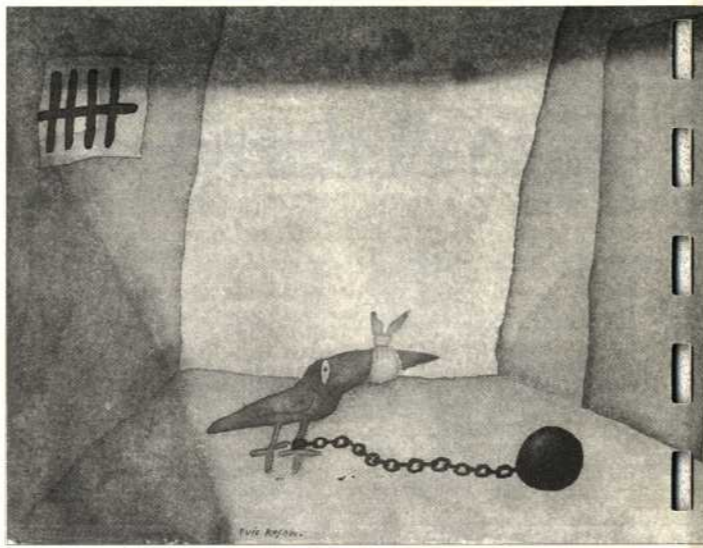
수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미국등 6개국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존치국이며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한국은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00여개가 된다.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며 지금도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987년 이른바 가정과피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위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가 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였다는 도덕적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재고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다른 살인 행위일 뿐이다.

#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장애물과 희망

이 글은 91년 9월 16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내 인권분과회의(Conference on the Dimension)의 일환으로 열린 사형에 관한 국제앰네스티 세미나에서의 발제문이다



서, 우리는 왜 다른 나라들에서 고문이나 정치적인 구금을 국민들이 그저 조용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과묵치한 형벌이기에 어떠한 조건에서도 금지된다는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반대운동을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별로 거부감을 안 준다는 사실이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잔인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어떤 특정한 시각에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고받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 무력하게 붙잡혀 있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든 간에 그것의 명백한 잔혹성을 확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잔혹성을 부인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들은 이 잔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인권유린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전부터 수없이 사용된 주장을 무기로 삼는다.

첫째는 사형은 잔인하고, 어쩌면 악랄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우리는 왜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잔혹행위를 가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해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살해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수인들을 살해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Index: IOR 52/04/91)

래리 콕스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부총장)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고, 사형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런데 사형에 대한 옹호는 이성적인 주장과 논거들에 단지 부분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의 깊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다. 이 세계에는 그리고 특히 미국에는 많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의 강력범죄는 오랜세월 동안 증가해 왔고, 집값, 마약 사용, 민간인의 무기 소지율의 확산과 마찬가지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흔히 이들의 지도자들과 언론에 의해 제안되는 대책은 사형이다. 그리고 사형이 이들에게 제안되는 유일한 대책일 경우, 이것이 실재 시민들을 보호하는데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두려움을 염두에 둔 어떠한 대안이 주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것만을 물을 경우, 그들은 압도적으로 - 때로는 79%나 - '예'라고 답한다. 그런데 질문에서 선택의 범위가 '가장'과 '가장'이 없는 중신형의 '가장'로 넓어지게 되면 대부분은 중신형을 택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구금자의 가족에게 구금이 더불어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가 덧붙여진다면, 사형 찬성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사형 찬성률이 4%까지 떨어졌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사면이 없는 말 그대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중신형이 대안과 더불어 강력범죄의 인인을 형성하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와 동시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확실한 검거 및 유죄판결이 증가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일 경우, 도대체 미국에서

누가 사형제도를 옹호하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 같다. 만약 사람들이 범죄를 막아보려는 방안으로 사형제도의 실패에 대한 정보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진지하게 표명하는 어떤 대안에 대해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행위의 유혹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다. 사형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 '억제'는 새로운 주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옹보'라는 것이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주장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인간사회로부터 분리될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밖에서 그들은 더이상 인권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외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위 주장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감정은 두려움 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증오이다.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한 동시에 위험한 것이다. 이 주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때문에 고문을 받거나 재판없이 투옥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이 있는 자들을 죽이고 싶게 만드는 범죄를 알고 있거나,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살상하는 사람, 또는 자식, 또는 둘 다를 살해한 사건을 떠올려보면 된다.

그러나 '옹보'로서의 사형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당하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재판제도를 요구한다. 똑같은 죄, 또는 더한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두면서 단지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제도는 '옹보'가 아니라 제

바치기이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는 제도이다. 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범죄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명백한 희생이고,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몇몇 수인들을 제물바치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약 200명이 사형집행을 위해 추려진다.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사형사건에 대한 재심리 결과에 의하면 1972년 이래 4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 이래 사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세상에 알려진) 무고한 23명의 사형수들이 집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불공정한 법의 집행을 밝혀낼 수 있는 노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제도에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경우에도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범죄의 성격때문이다. 그들의 경제적 지위, 그들의 피부색, 또는 그들이 죽인 사람의 피부색 또는 경제적 지위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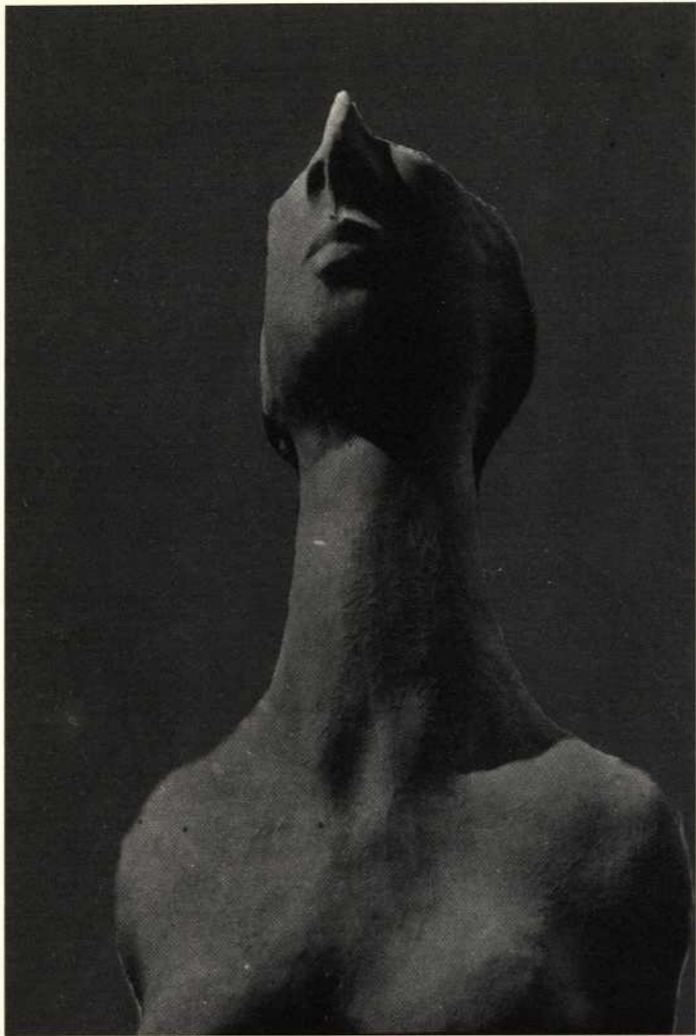
모든 사형의 80%는 흑인들에게 린치를 통해 죽이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주에서 집행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사형은 생애 있어서 인종문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 상원의 회계위원회에서는 최근에 28건의 상이한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인종문제가 사형의 모든 단계 - 고소, 선고, 집행 - 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인종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조지아주에서 백인을 죽였다면 흑인을 죽였을 때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7배나 된다. 지난 주 뉴욕타임즈는 1면 머릿기사로 한 사형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이야기가 머릿기사로 처리된 이유는 지난 50년간, 그리고 1,000건이 넘는 사형집행 중에서 처음으로 백인이 흑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백인은 모두 백인만을 살해한 아홉번의 전과가 이미 있었다.

나는 미국의 범죄재판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범죄재판제도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의 편견과 불평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놀랍지는 않다. 진정으로 유감스럽지는 않지만 더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사람을 죽게도 살리게도 만드는데 쓰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이미 보통사람들보다 모자라는 조건을 가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것을 선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사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에게 그들이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결국에 죽이는 것은 훨씬 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사형이 우리에게 내건 하나의 도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개방된 질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진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불가능한' 변화에 힘입어, 나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는 정부에 의한 인간의 살인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할 국가와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찬반 이론 역시 분명히 구분되는 실정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일반 대중들이 사형폐지 운동에 대해 느끼는 가장 흔한 질문들을 모아 엠네스티가 답변의 형식으로 그 입장을 정리한 자료이다.

**1) 사형은 폭력적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 여태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제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1980년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회의'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형의 억제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1949-53년간의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검토한 어떤 자료에서도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1983년의 한 연구는 사형을 폐지한 14개국의 단기, 중기, 장기 살인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조사대상국의 절반 이상에서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형집행 직후 살인율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093-63년간 뉴욕 주의 월간 살인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다음달에 평균 두 건의 살인사건이 더 발생하였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많은 범죄들이 엄청난 감정적 고조상태, 공포 또는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2) 사형이야말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닌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범죄자들도 있지 않겠는가?**

# 사형 폐지 운동의 문점에 대한 엠네스티의 답변

“국가는 죄인을 처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 국가는 죄인을 처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처형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의심심이 줄어들게 된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흔히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범인에게 책임소재를 가볍게 지우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오랫동안 폭력범죄는 흔히 빈곤, 실업, 알콜중독, 결혼 가정 등과 같은 여타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해 왔다. 이런 문제들은 사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3) 죄수를 사형시키는 대신 종신토록 교도소 내에 가두어두는 것이 더 가혹하지 않은가?**

- 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처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처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엠네스티가 입수하였던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처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법률상 종신토록이라도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다.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로 인정되어왔다.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4) 사회의 기반 그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주의자,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사형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 명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형제도에 의존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과 그 대의명분에 대한 순교자로 행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형은 범죄의 억제책이라 보다는 차라리 유인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엠네스티는 사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사법체제 내에서 항소의 권리가 보장되고 증거주의의 기준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 사형은 최종적인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무고한 사람이 일단 처형되어버리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이 형벌의 한 형태로 남아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처형된 후 무고함이 밝혀진 사형수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과 사형언도 후 처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 심지어 사형선고후 수시간 내에 처형이 행해져서 항소나 사면청원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다.

**6) 사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사형 집행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대중의 사형지지도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똑같은 결과의 범죄, 그리고 동일한 상황의 범죄라 해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미국 및 여타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들중 실제 사형을 선고받는 죄수들은 비교적 소수이다.

**7) 국민여론이 사형을 지지하는 경우 어떻게 정부가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형폐지 운동과정을 통하여 엠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단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접하기만 하면 그 주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엠네스티는 사형이 인권유린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치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대중여론을 환기시키고 계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정치가들이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대중의 존경을 잃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

**8) 추상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란 쉽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인지가 살해되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 사형시킨다고 해서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을 되찾지도 못하며 그 가족들의 손실을 덜어

주지도 못한다. 범죄피해자의 친지들이 가지는 절박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사형된 죄수의 가족에게도 또한 슬픔과 고통을 야기시키며 폭력의 악순환만 더할 뿐이다. 그러한 피해자 가족들을 진정으로 돕고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보강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9) 사형수를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보다 사형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가?**

-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불어 사형제도 또한 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이다. 왜냐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도 엄밀한 항소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엠네스티가 일반 범죄로 인한 사형수보다는 차라리 양심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엠네스티 활동의 핵심은 엠네스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약은 엠네스티 조직의 최고결정기구인 국제총회에서 확정된다. 규약 제 1조에 따르면 엠네스티는 첫째 양심수의 석방, 둘째 정치적 수인의 공정한 재판, 셋째 어떤 경우이건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위해 활동한다.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엠네스티는 최선을 다하며, 최근 1985년 국제총회에서 여러차례 강조된 것처럼 사형폐지 운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 사형수들 중에는 반드시 일반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수인과 양심수들도 오래동안 사형선고와 처형의 대상이 되어왔다.

**11) 엠네스티가 생명권을 믿는다면 왜 낙태에는 반대하지 않는가?**

- 엠네스티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엠네스티의 활동은 수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엠네스티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의 영역을 언제나 제한시켜왔다. 낙태, 안락사, 대중위생과 영양공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달리 많지만 그것들은 엠네스티의 활동범위 밖의 일이다. 엠네스티 회원 개개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겠으나 조직으로서의 엠네스티는 이들 문제에 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12)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엠네스티가 사형의 시행을 찬성하는 특정종교를 모독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각국정부에 청원하는 경우 엠네스티는 특정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공격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강조한다. 종교적 교리는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주요 종교들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자비를 명한다. 주요 종교의 단체들 중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도 많다.

**13) 엠네스티의 활동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가 있는가?**

- 엠네스티는 자신의 활동만으로 인권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저명한 정치적, 종교적,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인권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권보장을 위한 한 기구로서의 엠네스티적 활동위상이 사형폐지의 과정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실제로 진전사항이 있었다. 1975년 이래 일년에 최소한 일개국이상이 법률상 사형을 폐지했거나,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후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나라들을 상대로 엠네스티는 사형폐지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해왔다. 국제법상으로도 사형폐지를 염두에 두고 그 시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발전사항이 있어 왔다.

**14) 엠네스티의 회원으로서 자신은 사형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사형 폐지를 위해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엠네스티의 1981년 국제총회는 모든 엠네스티 회원들에게 엠네스티의 모든 활동목적을 조건없이 동일하게 추구하라고 촉구하였다. 1985년 국제총회는 모든 지부들에게 엠네스티의 단위 그룹들이 수임사항의 여러가지 면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라고 요청하였다. 이 말은 사형폐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회원들은 사형의 사실과 문제점들을 연구해 보고 엠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라는 것이다. 엠네스티의 각국 지부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그 회원들에게 사형폐지의 주장과 논거를 교육시키도록 권고받고 있다.

# 사형폐지의

# 국제법적 근거

아래문헌들은 사형제도의 폐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유엔 문서, 국제협약, 결의안 등을 수집하여 관련조항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수록문헌의 수집과 정리는 엠네스티 런던 본부가 맡아서 편집하였으며, 이 내용은 1989년 엠네스티가 간행한 전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보고서인 *When the State Kills*...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은 아래의 문헌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편집자주)

## 1. 세계인권선언(발췌)

**제3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과 신상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아무도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발췌)**

**제6조**  
1. 모든 인간은 타고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아니한 국가에서는 범행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극악한 범죄에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본 협약과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사형은 관할법정의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박탈이 집단학살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 조항이 본 협약가맹국에게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일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특사 또는 감형을 청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경우의 사형선고에서 사면, 특사 또는 감형이 허용되어야 한다.

5. 18세이하의 사람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아니되며 임신한 여성을 처형해서도 아니 된다.

6. 이 조항 중의 어떤 내용도 본 협약가맹국에 의해 사형폐지를 지현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1. 사람은 법정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기소된 범죄혐의의 판정 또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관할법정에서 공정한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미풍양속, 공공질서 또는 주사회의 국가안보상 이유로서 또는 재판당사자 사생활의 이해상 요구될 때 또는 공재판이 공정한 이해판단을 해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법정의 견해로 비공개가 극히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 본과 일반대중으로부터 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해상 요구될 때 또 소송절차가 부부생활의 분 또는 어린이의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건 또는 사법소송의 어떠한 결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3. 기소된 범죄행위의 판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음 최소의 안전조치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

(a) 부당한 기소혐의의 내용과 사유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고지받을 수 있을 것.

(b) 변호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고, 스스로 선택한 변호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판을 받을 수 있을 것.

(d) 당사자의 출두하에 재판받고 본인 스스로 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통해 변호할 수 있을 것. 변호인이 없다면, 자신의 권리에 관해 고지받을 수 있을 것. 공정한 이해판단을 요구될 때 그리고 변호인을 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것.

(e)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해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통해 신문할 수 있고 불리한 증인의 경우와 동등한 조건으로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을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사하지 않을 경우에 무료로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g)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자 또는 유죄인정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

4. 청소년 범행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그 연령과 교화의 추구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자신의 판결과 선고내용이 상급법원에의 재심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오판이 백히 입증되어 유죄판결이

반복되거나 사면된 경우, 그 오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그 당시 상기 사실의 미발견에 자신의 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7. 그 누구도 자국의 법률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무죄석방된 사건에 대해 재차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그 누구도 행위 당시 자국 또는 국제법상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의 범행 당시 인도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범행 이후 그 범행에 대해 더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마련된다면 그 조항에 의거하여 범죄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이 조항 중 어떤 내용도 행위 당시 국가사회가 인정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범죄로 간주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설립된 '인권위원회'가 1982년 7월27일, 제378차 회의(16차회의)에서 채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6조의 일 반해설'(발췌)**

1) 본 협약의 제6조에 천명된 생명권은 모든 개별국가 보고서에서 다루어져 왔다. 생명권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시에도 훼손될 수 없는 최고의 권리이다(제4조). 또한 이 권리는 좁게 해석될 수 없는 권리이다.

2) 제6조의 1항에서 2항까지의 내용상 가맹국들이 사형제도를 전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가맹국들은 사형제도 시행을 자제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맹국들은 상기 정신에 비추어 자국내의 형법을 재검토해보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서건 사형의 시행을 '가장 극악한 범죄'에 국한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본조항은 사형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2항 및 6항) 강력히 제안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사형폐지

를 지칭한다. 본 위원회는 사형폐지를 향한 모든 조치가 제40조의 의미에 비추어 생명권의 향유라는 점에서 진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본 위원회는 상당수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이미 폐지했거나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 보고서는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시행제한을 향한 진전이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7)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가장 극악한 범죄'라는 표현이, 사형제도가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의미로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6조의 명백한 기술에 비추어 사형이 범행 당시의 시행법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본 협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점에서 설정된 시행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독립적인 법정에 의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무죄추정, 피고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및 상급법원에 의해 재심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상기 제반권리는 특사 또는 감형을 요청할 특권에 추가해서 적용된다.

**4. 1984년 봄 회기중 5월 25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 1984/50결의안으로 채택되고, 1984년 12월 14일 유엔 총회가 39/118 결의안으로 무투표 채택하여 승인된 '사형수의 권리보장을 위한 안전조치'**

1)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사형의 범위 또한 치사 또는 기타 극히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 고의적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해한다.

2)3) 사형은 범행 당시 시행법률에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던 범죄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범행 이후 그 범행에 대해 더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설정된다면 그 조항에 의거하여 범죄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3) 범행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서는 아니 된다. 임신한 여성, 출산모 또는 정신이상자를 처형시켜서도 아니 된다.

4) 사형은 다른 방식으로 진상 규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에 의

해 기소된 사람의 유죄가 입증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5) 사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 즉 최소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의 내용과 동일한 조치를 갖춘 사법절차에 따라 관할법정의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상기 조치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받거나 그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이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6)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항소가 의무사항이 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7)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특사 또는 감형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경우의 사형선고에서 특사 또는 감형이 허용되어야 한다.

8) 사형은 항소 또는 기타 상환청구소송 또는 특사, 감형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중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사형은 가능한 한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5. 미주 인권협정**

**제4조 [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수태되는 순간부터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관할법정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또 범행 이전에 제정된 사형부과 가능한 법률에 부과되어야 한다. 사형의 시행이 현재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까지 확대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사형이 부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일반 범죄로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사형은 범행 당시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특사,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경우에 상기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탄원이 소관 당국에 의해 심의되는 도중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과 법무부의 공식답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청와대, 110-050

### 존경하는 대통령께,

대한민국 국정을 수행하시는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최대의 인권단체로서 약 160여개국의 140만 이상의 회원들이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초월하여 오직 인권문제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약 400여명의 회원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런던 국제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평하고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이미 세계 90개 국가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협약(B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통하여 유엔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 규정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주목하면서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며,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을 야수화하는 경향을 가진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와 단순한 법감정을 이유로 사형을 무리하고도 조급하게 시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형벌이므로 부디 신중하게 숙고하여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제인권협약(B협약)의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대통령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4년 12월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일동

**법무부**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3-7045 / (전송) 503-7046

문서번호 인권 07000-499	시행일자 1994. 11. 27				
수신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주소 사무국장 모함호	제출	처리과	담당자	지시
		접	일시	결	재
		수	번호	제	용
		처	리	용	합
		당	자		

제목 "사형제도 폐지 요망"에 대한 회신

1. 정부합동 인권실 알인상 07000-33619('94. 11. 16)호 관련입니다.

2. 귀 지부에서 요청하신 '사형제도 폐지'에 관하여 우리부의 입장을 별첨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첨부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 1부. 끝.

**법무부장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

○ 사형은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긴급적 피해야 할 일이지만 미국의 다수주와 일본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귀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없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음

○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가상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코자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 범죄에 한하여 사형을 인정하고 특별법상의 사형조건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사형의 남용을 억제해 나가고 있음

## 93년도 세계사형선고및 집행에 관한 통계

(AI Index: ACT 51/01/94)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는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진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동안 중국에서 1,411명이 사형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실제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알려진 세계의 모든 사형집행수치의 77%이다.

### 1993년동안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기에	벨리즈	베닌	보스니아-헤르체코비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코모로
트리브아르	쿠바	이집트	적도기니
스토니아	가봉	가나	기이아나
인디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마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웨이트	레바논	리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라위	마우리티우스	몰도바
고	모로코	니제리아	파키스탄
란드	세인트	빈센트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	리온	싱가폴	남아프리카
단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타이완
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코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미국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	

### 1993년동안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방글라데시
국	이집트	적도기니	그루지야공화국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크공화국
웨이트	라트비아	리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단	시리아	타이완	터크멘공화국
간다	미국	예멘	싱가폴

한국정부는 사형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B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42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3년에는 한국에서 1건의 집행도 없었으나 94년 10월 6일 15명이 지존과 사건등을 연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사형집행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을 희망합니다.

##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1995년 1월 현재)

세계의 사형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93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16개국가가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폐지했다. 또한 21개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현재 존치국은 103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0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때 47%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리스가 완전폐지국으로 분류되었고 루완다와 통가, 필리핀이 사형은 존치하나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53개국)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아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 슈타인	말라 군도	모나코	모잠비크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티칸	베네주엘라
사용투메프린시	산마리노	솔로몬 군도	스웨덴
슬로바크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안도라	앙골라	에쿠아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체코 공화국	케이프 베르데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리바티	투발루	파나마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마케도니아	하이티
헝가리	호주	혼두라스	홍콩
그리스	아탈리아		

### 일반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16개국)

네팔	멕시코	몰타	브라질
사이프러스	세이셸	스페인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	파라과이	페루	피지

###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국가.(21개국)

필리핀	나우루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말다이브	바레인	버뮤다	벨기에
볼리비아	부탄	브루나이	서사모아
세네갈	스리랑카	지부티	코모로스
코트디브아르	토고	파푸아뉴기니	르완다
통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성명서

어제 아침 법무부는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이던 1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사형 집행은 이른바 문민정부의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통상적인 형집행의 일환임과 동시에 최근 강력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의지로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모든 범법자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회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는 여러차례 걸쳐 사형의 잔인함과 비인도성을 한국정부에 지적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할 것과 사형집행을 유보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잔인하며 비인도적이고도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며,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며,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 시키며,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이 많은 형벌이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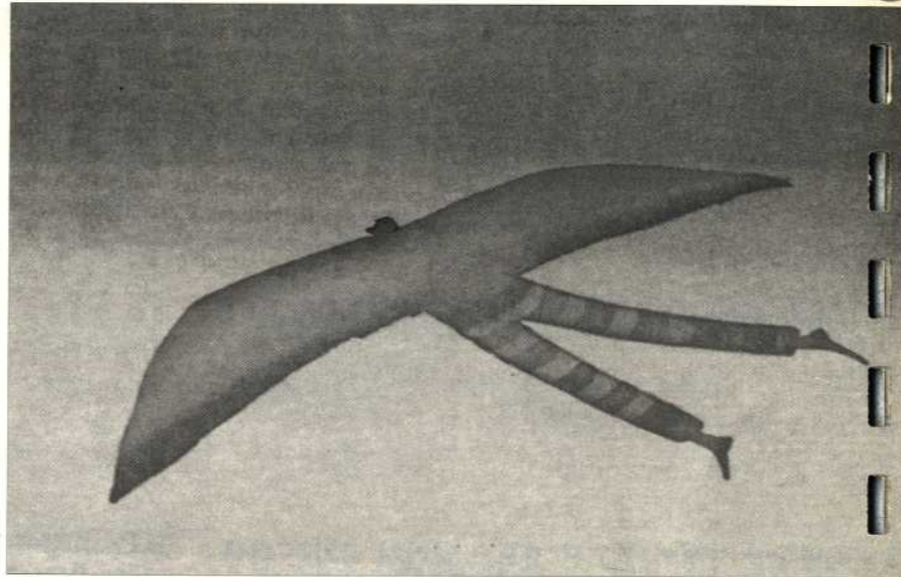
사형은 이미 세계 90개국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형폐지를 위한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을 실시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명을 사형집행한 한국정부의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단순한 법감정에 근거하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정부가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사형폐지 논의를 통해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금 사형대기중인 나머지 42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이들의 사형집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을 종신형으로 감형하여 비록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된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소한의 생명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희망한다.

1994년 10월 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 (95년 1월 현재)

한국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2명내지 5명정도가 누락되었으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번호	사건번호	이름	죄명	형확정일
1	87-2533	김만수	살인 및 기타	1988. 3. 8
2	90-271	김순자	살인 및 절도	1990. 4. 10
3	90-1691	박송규	살인 및 기타	1990. 6. 14
4	90CA2511	임상출	살인 및 기타	1991. 2. 8
5	90CA3090	임영자	살인	1991. 3. 8
6	90CA3090	한춘도	살인	1991. 3. 8
7	91CA55	김중석	방화 및 우발적 살인	1991. 3. 12
8	91CA72	강순철	살인 및 절도	1991. 4. 12
9	91CA933	이건호	살인 및 기타	1991. 6. 25
10	91CA1152	최명복	살인 및 기타	1991. 7. 23
11	91CA1169	변운연	살인 및 기타	1991. 7. 26
12	91CA1014	신민철	존속살해	1991. 8. 13
13	91CA1466	김동식	살인 및 기타	1991. 8. 27
14	91CA1345	배진순	특수절도 및 강간	1991. 8. 27
15	91CA1345	김철우	특수절도 및 강간	1991. 8. 27
16	91CA2261	박현룡	절도 및 강간	1991. 12. 10
17	91CA2425	지춘길	방화	1991. 12. 10
18	91CA2514	송중호	살인 및 기타	1991. 12. 10
19	91CA2764	임풍식	살인 및 기타	1991. 12. 24
20	91CA3326	이형길	존속살해	1991. 12. 25
21	92CA668	김준영	살인	1992. 5. 8
22	92CA356	김영환	살인 및 기타	1992. 5. 26
23	92CA873	김용재	살인 및 기타	1992. 6. 9
24	92CA985	한재숙	살인	1992. 6. 26
25	92CA1241	신중우	살인 및 기타	1992. 8. 18
26	92CA1989	곽도화	살인	1992. 10. 13
27	92CA1989	오승관	살인	1992. 10. 13
28	92CA2148	장중건	살인 및 절도	1992. 10. 23
29	92CA1613	이두규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2. 10. 27
30	92CA2085	이상수	살인 및 강간	1992. 11. 10
31	92CA2085	전장호	살인 및 강간	1992. 11. 10
32	92CA2398	유영택	살인	1992. 11. 24
33	92CA2115	정은희	살인 및 기타	1992. 11. 24
34	92CA2472	태규식	살인	1992. 10. 20
35	92CA917	김성도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2. 13
36	93CA494	AmirJal*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5. 14
37	93CA494	MarMhantzAed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5. 14
38	1045	서혁빈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3. 6. 8
39	1549	김진태	존속살해	1993. 7. 27

(C - 범죄유형, A - 최종 항소, \* - 파키스탄인)

## 중국의 사형실태 소개

### 11개월 동안 1249명이 사형되다

중국에서는 1993년 9월 한달동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례없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들중 수백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다.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에 의하면 93년 9월 한달동안 57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중 37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즉시 사형집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사형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 93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형집행된 사람들의 숫자는 92년도 전체 집행자의 수를 훨씬 초과하는 1,249명이다. 이 수치는 중국당국이 사형집행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 사형집행된 사람들의 수에 훨씬 못미칠 것이다.



9월중순 80명이 절도, 폭력강간 등의 범죄로 장지지역의 여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후 모두 사형집행되었다. 93년 11월 25일에 140명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이유로 헨안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사형집행되었다. 대부분은 폭력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중 많은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 벌금형이나 구금형으로 간주될 절도나 횡령 등 비폭력 범죄혐의로 사형집행되었다. 유 바우중씨의 경우는 헤이룽장지역에서 소 14마리를 훔쳤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수치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 숫자가 폭력추방운동 기간, 설날, 국제마약추방의 날인 93년 6월 26일 등에 잡채된 범죄를



고하기 위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유형으로 중국국경일인 10월 1일에는 사형집행이 급격하게 증된다. 특히 9월에 사형선고가 많은 이유는 8월 둘째주부터 정부가 전국적으로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부정이 적발된 사람은 사형집행을 비롯한 가혹한 형벌이 따른다. 실제로 수상인 장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 개인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체포와 사형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건전한 풍조를 척결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운동의 결과로 수십명의 공무원이 금품수수 및 횡령을 이유로 총살되었다. 예를들면 9월 22일 안후이지역의 헤페이에서 4명의 공무원이 경제적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중 은행원인 쟁 운씨는 3,000루엔(한화로 약 1,830만원정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배심원에게 상소하였으나 안후이지방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잔인하고 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을 반대한다. 중국정부는 사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92년 전세계에서 실시된 사형집행중 69%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공정한 재판과 자기방어를 위한 기회 그리고 자기권리 행사를 보장하도록 사법적 절차를 재검토하라.
2. 사법적 절차가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중지하라.
3. 사형을 선고받은 수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족쇄 채우기, 격리수용과 같은 가혹행위를 종식하라.
4. 사형수들의 완전히 자유로운 동의없이 장기이식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93년 6월 북경의 처형장 - 카이광잡지제공)

